

#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1 : 미국 · 캐나다

김 현 수



입법평가 연구 13-24-⑤-2

#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1 : 미국 · 캐나다 -

김 현 수

#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1 : 미국 · 캐나다 -  
A Study on Review of Legislative Evaluation  
- Comparative Study on Legislative Evaluation 1 :  
United States · Canada -

연구자 : 김현수(부연구위원)

Kim, Hyun-Soo

2013. 10. 15.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입법평가에 관한 이론과 사례 및 비교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입법평가 제도화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입법평가 이론을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수준으로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II. 주요 내용

### 미국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 미국은 행정명령 제12866호를 통해 연방부처로 하여금 공중의 건강과 안정, 환경 혹은 미국 국민의 복지보호 또는 개선을 위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오바마 정부에서는 행정명령 제13563호가 공포되었고, 규제의 개선과 규제검토를 위한 규제영향분석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 캐나다에서는 2006년의 정권 교체 후 보수당 새 정부가 Advantage Canada: Building a Strong Economy for Canadians이라는 장기 경제 계획을 책정했음
- 또한, 이와 관련해 규제 합리화를 위한 내각 지침(Cabinet Directive on Streamlining Regulation: CDSR)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주제어 : 입법평가, 규제영향분석, 규제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서미국, 캐나다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s

### Background

- It is necessary to research existing foreign systems related to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in order to develop existing research on the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in Korea.

### Purposes

- This research intends to analyz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the U.S. and Canada, especially focusing on organization, relevant laws, and best practices.
- It also seek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model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 II . Main Contents


###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the U.S.

- In 1993, President Clinton signed Executive Order 12866 that established the guiding principles agencies must follow when developing regulations, including encouraging the use of cost-benefit analysis, risk assessment, and performance-based regulatory standards.

- The executive order also established the regulatory planning process for each agency, delegating authority to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OIRA) to coordinate agency rulemaking efforts with the regulatory priorities of the President.
- In 2011, President Obama signed Executive Order 13563,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which calls on agencies to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and an open exchange of information, and perspectives among State, local, and tribal officials, experts in relevant disciplines, affected stakeholders 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public as a whole.

####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n Canada

- The Cabinet Directive on Streamlining Regulations (2007) reformed federal regulatory policy. It required that performance measurement, service standards, international trade and cost-benefit analyses are applied to regulatory proposals.
- The Cabinet Directive on Regulatory Management, which came into effect on April 1, 2012, strengthens the previous Cabinet Directive on Streamlining Regulation, introduced in April 2007 to implement a streamlined regulatory system that delivers the greatest benefits to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of Canadians.

 **Key Words :**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egulatory Impact Analysis Statement, U.S., Canada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5
제 1 장 서 론 .....	9
제 1 절 연구의 목적 .....	9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0
제 2 장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연혁과 법적 근거 .....	11
제 1 절 미 국 .....	11
1. 연 혁 .....	11
2. 법적 근거 .....	13
제 2 절 캐나다 .....	18
1. 연 혁 .....	18
2. 법적 근거 .....	19
제 3 장 규제영향분석의 대상과 추진기관 .....	23
제 1 절 미 국 .....	23
1. 규제영향분석의 대상 .....	23
2. 추진기관 .....	27
제 2 절 캐나다 .....	29
1. 규제영향분석의 대상 .....	29



2. 추진기관 .....	32
<b>제 4 장 규제영향분석의 내용(방법론) 및 사례 .....</b>	<b>35</b>
제 1 절 미 국 .....	35
1. 규제영향분석의 내용 .....	35
2. 규제영향분석 사례 .....	44
제 2 절 캐나다 .....	47
1. 규제영향분석의 내용 .....	47
2. 규제개혁과 최근의 가이드라인 .....	54
3. 규제영향분석 사례 .....	64
<b>제 5 장 결 론 .....</b>	<b>67</b>
<b>참 고 문 헌 .....</b>	<b>69</b>
<b>【부록 1 : 미국】</b>	
행정부장관, 행정기관장 및 독립규제기관장 전달 메모 .....	75
<b>【부록 2 : 캐나다】</b>	
캐나다의 규제 합리화에 관한 지침 .....	85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입법평가(Legislative Impact Assessment)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간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입법평가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미국, 독일, 유럽 등의 제도에 관한 기초적 연구 및 관련 제도에 기반한 사례 연구가 행해졌다. 둘째, 비교법적 연구와 더불어 입법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평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표준비용모델, 비용·편익분석모델 등 다양한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셋째, 이러한 비교법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시범적인 입법평가가 실시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초적 연구와 시범적인 입법평가의 축적과 함께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그간 이루어졌던 입법평가에 관한 이론과 사례 그리고 비교법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입법평가에 관한 제도화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동 연구는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입법평가의 제도화의 논의를 위하여 기존의 관련 연구를 종합·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동 보고서에서는 전통적인 입법평가의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규제영향 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에 있어 제도의 마련과 실행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종합하여 정리함으로써 향후 국내의 제도화 논의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종합·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방법에 이어 제2장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연혁과 더불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고찰하고 관련되는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이 되는 규제와 국가차원에서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기관들을 중심으로 관련 임무에 대해서 살펴본다. 미국과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은 의회의 법률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하위법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영향분석의 대상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별되고 평가의 내용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제4장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의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의 개선을 반영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이와 함께 규제영향분석의 사례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제 2 장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연혁과 법적 근거

## 제 1 절 미 국

## 1. 연 혁

미국은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는 국가로 평가된다. 1971년 닉슨 행정부에서 규제안과 그 대안과의 사이에 비용에 관한 비교를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의 질’ 리뷰(QOL Review)가 도입된 것이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발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후 1974년, 1976년 포드 행정부에서 주요한 규제안<sup>1)</sup>에 관해서 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것을 요청하였고, 1978년 카터 행정부에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도입하였다.

1981년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완화·개혁정책의 한 수단으로 행정명령 제12291호(Executive Order 12291)<sup>2)</sup>를 공포하였고, 이에 근거한 규제의 경제적 분석이 현재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의 사전평가제도에 대한 원형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어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행정명령 제12291호를 승계하면서도 ‘규제 질의 유지 및 향상’이라는 점에 중점을 둔 제도로서 경제적 분석을 중요시하며, 제3자 기관의 관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제12866호(Executive Order 12866)<sup>3)</sup>를 공포하였다.<sup>4)</sup>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동 행정명령에 기반을 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1년 1월 규

1) 여기에서 경제적 영향 1억불 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2) Executive Order 12291 of Feb. 17, 1981.

3) Executive Order 12866 of September 30, 1993.

4) 이에 관한 상세는 박영도·한귀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II),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 07-02, 23-25면 참조.

제의 개선과 심사에 관하여 새로이 행정명령 제13563호(Executive Order 13563)가 공포되었다.<sup>5)</sup> 동 행정명령은 기존의 행정명령 제12866호에 다음과 같이 규제개선에 관한 일부사항을 추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국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참여는 온라인 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손쉬운 규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부처의 공무원, 전문가 및 국민 사이에서 각자의 관점에 따라 해당하는 규제에 관한 열린 교환(open exchange)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규제의 단순화와 조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간 협력의 증대(integration and coordination)”를 촉구함으로써 행정명령 제12866호의 관련 조항을 보완한다.<sup>6)</sup> 셋째, 각 기관은 부담을 줄이고 유연성과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규제방식을 발굴하여 고려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규제도구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sup>7)</sup> 넷째,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기관의 규제행위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과학·기술적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규제에 대하여 “소급(look back)” 조항을 둬으로써 소급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8)</sup>

---

5) Executive Order 13563 of January 18, 2011,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6) EO 13563 Section 3 (“Some sectors and industries face a significant number of regulatory requirements, some of which may be redundant, inconsistent, or overlapping. Greater coordination across agencies could reduce these requirements, thus reducing costs and simplifying and harmonizing rules. In developing regulatory actions and identifying appropriate approaches, each agency shall attempt to promote such coordination,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Each agency shall also seek to identify, as appropriate, means to achieve regulatory goals that are designed to promote innovation.”).

7) EO 13563 Section 4 (“Where relevant, feasible, and consistent with regulatory objectives,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each agency shall identify and consider regulatory approaches that reduce burdens and maintain flexibility and freedom of choice for the public. These approaches include warnings, appropriate default rules, and disclosure requirements as well as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he public in a form that is clear and intelligible.”).

8) EO 13563 Section 6(a) (“To facilitate the periodic review of existing significant regu-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주기적으로 현존하는 주요 규제를 검토하여 수정, 확장, 간소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당해 기관의 규제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이게 하고 규제목적 달성을 위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sup>9)</sup>

## 2. 법적 근거

미국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1946)<sup>10)</sup>에 의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이 규제권한을 실행하는 경우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규제를 제정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의 내용과 관련하여 합리성, 비자의성, 재량권 남용의 금지, 국민에 대한 통지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절차 및 규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의 틀을 규정하는 것은 행정명령 제12866호이다. 동 행정명령은 정부기관이 새로운 규제나 기존의 규제에 대해 보다 개선된 계획에 의해 다른 기관과 관련 규정 사이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행정기관의 규제정책 결정과정을 재구성하여, 규제심사에 있어 완전성과 합법성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일반 공중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공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

lations, agencies shall consider how best to promote retrospective analysis of rules that may be outmoded, ineffective, insufficient, or excessively burdensome, and to modify, streamline, expand, or repeal them in accordance with what has been learned. Such retrospective analyses, including supporting data, should be released online whenever possible.”).

9) EO 13563 Section 6(b). 동 소급조항에 따른 국토안보부(DHS)의 소급분석에 관한 계획에 관하여는 <http://www.dhs.gov/xlibrary/assets/dhs-ogc-final-retrospective-review-plan-8-22-11-final.pdf> 참조.

10)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Pub.L. 79 - 404, 60 Stat. 237, enacted June 11, 1946. Shepard, George, *Fierce Compromis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Emerges from New Deal Politics*, 90 Nw. U. L. Rev. 1557 (1996) 참조.

다음과 같이 규제개혁의 추진체계와 규제입안과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명령 제12866호 “규제의 계획입안 및 심사”	
제 1 조	규제의 기본 원리·기초(Statement of Regulatory Philosophy and Principles)
제 2 조	조직(Organization)
제 3 조	정의(Definitions)
제 4 조	규정의 기획 입안의 구조(Planning Mechanism)
제 5 조	기존 규제(Existing Regulations)
제 6 조	규정의 집중적인 평가(Centralized Review)
(a)	부처의 책무(Agency Responsibilities)
(b)	OIRA의 책무(OIRA Responsibilities)
제 7 조	분쟁 해결(Resolution of Conflicts)
제 8 조	공고(Publication)
제 9 조	부처의 권한(Agency Authority)
제10조	사법 심사(Judicial Review)
제11조	폐지 철회(Revocations)

[표 1] 행정명령 제12866호의 구성

한편,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규제시스템이 경제성장, 혁신,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중의 보건, 복지,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일반적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신정부에서 추구하는 규제시스템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2011년 행정명령 제13563호를 통해 공표하였다. 동 행정명령에서는 규제에서 새로이 강조하는 것으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통합과 혁신을 개선하며, 융통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과학적 통합을 보장하고, 기존의 규칙에 대한 소급분석을 증진시키기 위한 원칙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sup>11)</sup>

11) 이에 관한 상세는 김현수,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미국의 의회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2. 7, 21-30면 참조.

### 행정명령 제13563호 “규제 및 규제심사의 개선”

- 제 1 조 규제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Regulation)
- 제 2 조 공중의 참여(Public Participation)
- 제 3 조 통합과 혁신(Integration and Innovation)
- 제 4 조 유연한 접근(Flexible Approaches)
- 제 5 조 과학(Science)
- 제 6 조 기존 규정의 소급분석(Retropective Analyses of Existing Rules)
- 제 7 조 일반 규정(General Provisions)

[표 2] 행정명령 제13563호의 구성

미국에서 규제제정의 권한을 가지는 모든 행정기관이 행정명령 제 12866호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동 행정명령 제3조 (b)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관하여 “US Code 제44편 제3502조 (1)에 규정된 행정기관 (일부의 특정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전체) 중 ‘독립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를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독립규제기관’이란 동법 제3502조 (5)에 예시되어 있는 연방통신위원회(FCC)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과 같이 개별법 등을 근거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독립규제기관’에서도 설명책임과 같은 관점에서 개개의 기관과 관련된 법령 등(설치법이나 내부문서 등)에 기하여 대통령 행정명령 제12866호와 유사한 분석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연방통신위원회는 대통령 행정명령 제12866호에 의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지 않아도 되지만, 동 위원회의 설치법인 ‘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4)’에서 소관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영향분석과 유사한 분석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sup>12)</sup>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12) 통신법 제 9 조 규정 요금(Regulatory Fees)



등 특정한 관점에서 별도의 규제에 대한 개별 분석을 의무화하는 법률 또는 규제영향분석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담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이는 규제영향분석이 레이건 행정부 이후 정치적 입장에서 행정명령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어온 한편, 의회 역시 행정기관의 규제 및 행정 사무의 적합성을 확인할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법률에 의해 규제의 사전평가 요건 등을 강화해 왔다는 측면을 나타낸다.

이들 법률은 각각 개별적인 목적과 배경을 가지는 것이지만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은 기본적으로 행정명령 제12866호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법률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은 규제를 소관하는 기관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명령 제12866호의 대상기관에 그치지 않고, 독립규제기관 역시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한다.

---

(a) 일반 원칙(General Authority)

(1) 비용의 징수 - 연방 통신위원회는 규제 집행 행위, 규칙 제정 행위,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국제 활동 등 규제 관련 행위를 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규제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한다.

(i) 계산 방법(Accounting System)

연방 통신위원회는 본조 (b) (3)에 따라 규제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그 계산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동위원회는 연례 보고서에서 해당 계산의 경과에 대한 분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해 관계자에 대해 본조 (a)에서 정하는 기능을 위원회가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배분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332조 이동 통신 서비스(Mobile Service)

(a) 민간 이동 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하기 위해 주파수 영역을 관리 할 때, 연방 통신위원회는 법 제1조의 원칙에 따라 다음의 관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생활 안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것으로인가?
- (2) 건강한 기술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운영상의 요구, 시장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 영역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정 제에 따라 주파수 영역 이용자에게 부과 부하를 줄일 것인가?
- (3) 경쟁을 촉진하고 가능한 한 이용자 수를 증가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것인가?
- (4) 민간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에서 기회를 공유, 상호 이용을 증가 것인가?

법 률 명	개 관
<p>국가 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 Policy Act 1969년 제정, 1982년 개정</p>	<p>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부의 활동을 대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대안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의무화 한 법률</p>
<p>문서감축법 Paperwork Reduction Act 1980년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차적 목적은 행정 사무의 간소화</li> <li>• OMB에 대해 정부의 전반에 걸친 서면 사무 감축 목표 설정 권한·의무를 부과</li> <li>• 정보제공·보고의무와 규제에 대한 OMB의 심사·승인을 얻을 것을 의무화</li> </ul>
<p>재원없는 명령의 개정에 관한 법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199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정부가 재원을 제공하지 않는 규제가 주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원을 압박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li> <li>• 주·지방 정부의 지출에 대한 영향이 큰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소관 부처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과</li> </ul>
<p>규제유연성법 Regulatory Flexibility Act 198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자 모두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부담을 부과하여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법률</li> <li>• 규제유연성법은 주요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영향에 의미가 있는 규제영향분석의 실시가 의무화됨</li> </ul>
<p>중소기업 규제집행공정법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1996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중소기업에 중요한 영향이 생기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해당 규제안을 폐지할 의무는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음</li> <li>• 따라서 중소기업 규제집행공정법에서는 주요 규제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상황에 관하여 당해 행정 기관, OMB 담당자, 중소기업청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검토됨</li> </ul>

법 률 명	개 관
데이터 품질에 관한 법 Data Quality Act 2001년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각 부처가 발표하는 정보가 일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법률

[표 3] 규제영향분석과 개별 법률

\* 출처: GAO(2001), Federal Rule Making, Procedural and Analytical Requirements at OSHA and Other Agencies, Statement of Victor Rezendes, Managing Director, Strategic Issues, June 14, 2001.

## 제 2 절 캐나다

### 1. 연 혁

캐나다는 1970년대부터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Socio-Economic Impact Analysis)이 이루어져 왔으며, 1986년에는 정부 정책에 의해 모든 규제 제안에 대해 규제영향분석(General Impact Analysis)이 의무화되었다. 이후 1999년부터는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정책이 개정되어 규제영향분석서(Regulatory Impact Analysis Statement, RIAS)를 작성하여 관보에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최근에도 이를 개정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2006년 5월에는 추밀원 사무국에서 ‘규제 제안의 선별을 위한 체계(Framework for the Triage of Regulatory Submission)’를 발표하고, 규제영향의 크기에 따라 규제영향을 낮음, 중간, 높음으로 규제 프로그램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2007년 4월에는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지침(Cabinet Directive on Streamlining Regulation)’이 시행되어 규제실시 후 평가를 수행하여

규제의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7년 10월에는 ‘비용·편익분석 가이드’가 제정되어 비용편익 분석을 다섯 단계의 시계열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지난 2012년 4월에는 2007년의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지침을 보다 강화하며 ‘규제관리에 관한 내각 지침(Cabinet Directive on Regulatory Management)’이 공표되어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지침은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며 증진시키고,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며, 증거(evidence)에 기반한 결정을 수행하며,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경제를 촉진하고, 행정부담을 감시하고 관리할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 법적 근거

전술한 바와 같이, 캐나다에서는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지침을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내각 지침(Cabinet Directive on Streamlining Regulation)으로서 2007년 4월 개정했다.<sup>13)</sup> 이 지침은 이전의 규제정책과 비교할 경우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1999년에는 규제가 실시되기 전 부처는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특정하고, 비용 및 편익, 경감되는 부담 및 환경적 평가, 협의 등이 요구되었지만, 새로운 정책에서는 생애주기 접근법(lifecycle approach)이 중요시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적지표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또, 서비스의 기준 또는 규제의 재검토라고 하는 측면 역시 중요하다. 이는 규제 프로그램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우선 규제를 개발·분석·실시하고, 이후 규제의 실시 후 해당 규제를 재검토 한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규제 실시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일단 실시가 이루어지면 관련 지표를 기초로 규제의 효과 등을 측정하여

13) 2007년 4월 1일, 총리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새로운 지침(directive)에 합의했다.

규제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검토를 통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해당 규정을 다시 개발 단계로 환원시켜 규제의 수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처럼 동 지침은 표준적인 규제정책의 개발 모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는 규제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내각지침”

캐나다 국민에 대한 약속

1.0 서론

2.0 적용범위

3.0 규제의 유연화에 관한 내각 지침의 실행

3.1 규제절차 요건

4.0 규제분석

4.1 규제 협의

4.2 공공정책 과제의 탐지 및 평가

4.3 공공정책의 목적 설정

4.4 규제 대응의 선택, 선정, 평가

정부수단의 적절한 혼용 선택

법적 함축의 평가

국제적 의무의 준수

조정과 협력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대안의 권고

4.5 실행, 준수, 집행 계획

실행계획

준수계획

집행계획

## 4.6 규제 측정, 평가, 재검토(심사)

실행 측정 및 보고

규제프로그램의 평가

규제체계의 재검토

## 5.0 캐나다 국민에 대한 계획 및 보고 의무

## 6.0 문의 및 추가적 정보

## [표 4]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내각지침의 구성

지침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의 측정, 평가 및 재검토를 수행하여, 각 부처는 규제가 관련된 정책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규제체계(regulation framework)를 업데이트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측정에서는 규제 프로그램에 관하여 미리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indicator)를 설정하고, 평가에서는 실시한 프로그램의 활동, 효과, 최종 성과, 성과 달성에 프로그램이 기여한 정도, value for money, 의사 결정 절차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재검토에서 규제의 정책 목적을 달성한 효과, 방법의 선택, 규제의 명확성,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 3 장 규제영향분석의 대상과 추진기관

### 제 1 절 미 국

#### 1. 규제영향분석의 대상

행정명령 제12866호의 제3조 (d)<sup>14</sup>에서는 ‘규제(regulation)’의 정의를 “연방 정부기관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는 일반적인 적용 및 그것이 장래에 미치는 효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법이나 정책의 이행, 해석, 규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연방 정부기관의 절차상·실무상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① 미국 법전 제5편 제556조, 제557조에 규정된 정식(공개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된 규정, ② 군사, 외교 관련 규제(조달에 관한 것, 비국방관련 물품·서비스의 수출입을 포함하는 것을 제외) ③ 연방 정부기관의 조직·관리·인사에 한정되는 규제, ④ 정보 및 규제업무실(OIRA)에 의해 지정된 상기 이외의 규제와 같은 네 가지 유형을 제외하고 있다.

---

14) EO 12866 Sec. 3(d) (“Regulation” or “rule” means an agency statement of general applicability and future effect, which the agency intends to have the force and effect of law, that is designed to implement, interpret, or prescribe law or policy or to describe the procedure or practice requirements of an agency. It does not, however, include:

- (1) Regulations or rule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al rulemaking provisions of 5 U.S.C. 556, 557;
- (2) Regulations or rules that pertain to a military or foreign affairs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other than procurement regulations and regulations involving the import or export of non-defense articles and services;
- (3) Regulations or rules that are limited to agency organization, management, or personnel matters; or
- (4) Any other category of regulations exempted by the Administrator of OIRA.)

또한, 동조 (f)에서 특히 ‘중요한(significant) 규제’로 다음의 네 가지 유형을 들고 있다. 이 중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해당 유형의 (1)에 해당하는 규제가 규제영향분석 작성의 대상이 된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effect on the economy)가 있는 규제 등<sup>15)</sup></li><li>(2) 다른 기관의 규제 등과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제</li><li>(3) 보조금·공공요금 등에 관한 예산 조치·대상자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하는 규제</li><li>(4) 법적 조치·행정명령 등으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법적·정책적 문제를 제기하는 규제</li></ol> |
|---|

[표 5] 중요한(significant) 규제의 정의

또한, 행정명령 제12866호 제4조에서는 연방 정부기관에 대해 ① 현재 검토단계에 있거나 심의과정에 있는 모든 규제안을 목록화한 ‘규제 예정 일람표(Unified Regulatory Agenda)’를 연 2회 작성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할 것,<sup>16)</sup> ② 해당 규제 예정 일람표(가을판)의 일부에서 차년도 이후에 작성예정인 ‘중요규제안’에 관한 계획을 기재한 “규제계획(Regulatory Plan)”을 작성하여, 매년 6월 1일까지 OIRA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7)</sup>

15) 대통령령 12866 제3조 (f)(1)에서는 이 표현에 이어 “... 또는 전체 경제, 경제 부문, 생산성, 경쟁, 고용, 환경, 보건 및 안전, 국가·지방·소수 부족의 정부 나 공동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라는 규정하고 있다.

16) EO 12866 Sec. 4 (b) (“**Unified Regulatory Agenda.**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agency” or “agencies” shall also include those considered to be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as defined in 44 U.S.C. 3502(10). Each agency shall prepare an agenda of all regulations under development or review, at a time and in a manner specified by the Administrator of OIRA. The description of each regulatory action shall contain, at a minimum, a regulation identifier number, a brief summary of the action, the legal authority for the action, any legal deadline for the action, and the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a knowledgeable agency official. Agencies may incorporate the information required under 5 U.S.C. 602 and 41 U.S.C. 402 into these agendas.”).

17) EO 12866 Sec. 4 (c) (“The Regulatory Plan.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예를 들어, 2006년 12월에 발표된 농무부의 ‘규제예정일람표’에서는 309건의 규제안이 열거되어 있으며, 이 중 149건의 규제안이 ‘중요한 규제’로 분류되어 ‘규제 계획’으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규제예정일람표 Unified Regulatory Agenda	규제계획 Regulatory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식별 번호</li> <li>· 규제의 개요</li> <li>· 법적 근거</li> <li>· 스케줄</li> <li>· 조 회</li> <li>· 연락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목적, 우선순위, 대통령의 우선 시책과의 관계</li> <li>· 규제의 개요(가능한 대안, 비용·편익의 추정 포함)</li> <li>· 규정에 의한 건강·안전·환경 위험 감소 효과</li> <li>· 법적 근거</li> <li>· 스케줄</li> <li>· 조 회</li> <li>· 연락처 등</li> </ul>

[표 6] ‘규제예정일람표’와 ‘규제계획’의 기재사항(예시)

행정명령 제12866호 제6조 (a)(3)에서는 규제의 사전평가에 관한 연방 정부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이 중 아래의 (A)에 해당하는 과정이 규제영향분석 작성의 대상이 되는 규제안의 스크리닝 절차이고, (B) 및 (C)가 실제 규제영향분석 작성요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 연방정부 기관은 OIRA의 요청에 따라 향후 책정을 예정하는 규제계획일람표에서 어떤 규제안이 ‘중요한 규제’에 해당하고, 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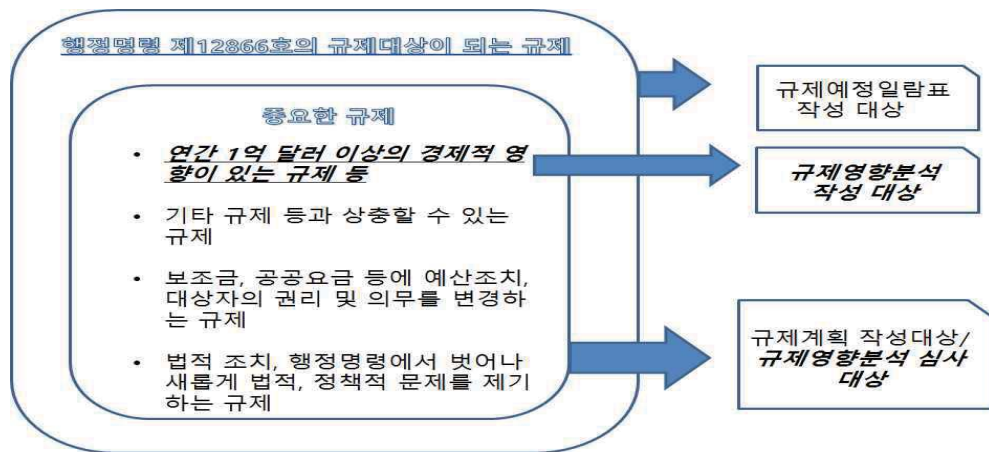
“agency” or “agencies” shall also include those considered to be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as defined in 44 U.S.C. 3502(10). (1) As part of the Unified Regulatory Agenda, beginning in 1994, each agency shall prepare a Regulatory Plan (Plan) of the most important significant regulatory actions that the agency reasonably expects to issue in proposed or final form in that fiscal year or thereafter.”).

제 3 장 규제영향분석의 대상과 추진기관

편 규제 안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가를 명시한 후, OIRA에 제출할 것이 요청된다.

- (B) 상기 (A)에서 ‘중요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된 규제안은 ① 규제안의 본문 및 보충자료, ② 규제가 실시된 때의 잠재적인 편익·비용의 개략적 계산에 관해 정리한 문서를 OIRA에 제출하여야 한다.
- (C) 또한, 대통령 행정명령 제12866호 제3조 (f) (1)에 해당하는 규제안 - 연간 1억달러 이상의 경제적인 영향이 있는 규제 등에 관해서는 전술한 (B) 뿐만 아니라, ③ 편익에 대한 평가 및 그 수치, ④ 비용에 관한 평가 및 그 수치 ⑤ 상정된 대체안의 비용·편익의 계산결과와 제안하는 규제가 대체안과 비교하여 우월한 이유에 관한 보충설명자료를 OIRA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범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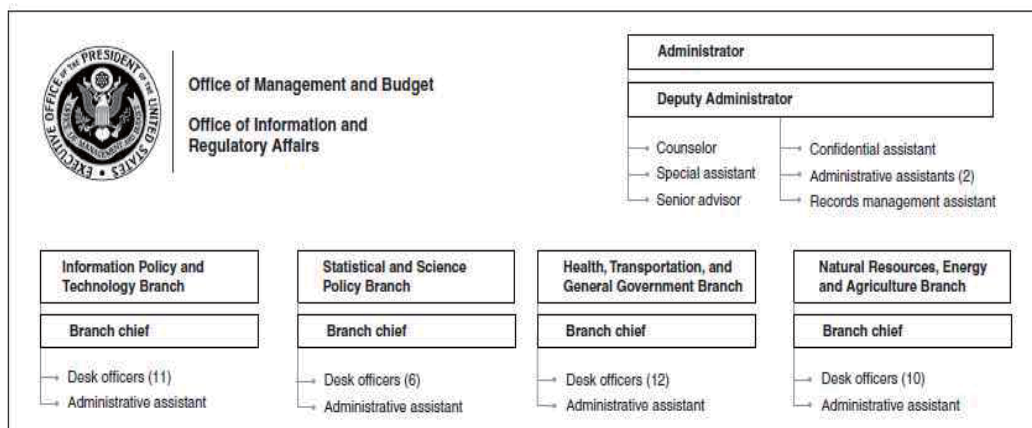
[그림 1] 행정명령 제12866호의 규제대상이 되는 규제

따라서 행정명령 제12866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년도에 책정할 예정인 규제안의 전체 목록인 ‘규제예정일람표’ 또는 ‘규제계획’을 작성·공표·제출하는 것이 요청되고, 해당 목록에서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이 되는 규제인지 여부를 각 연방 정부기관과 OIRA에서 판단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 2. 추진기관

정부기관에서 작성한 규제안에 대하여는 1980년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에 따라 의회에 의해 새롭게 설립·발족한 연방정부기관인 백악관 관리예산처(OMB)의 정보 및 규제업무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에서 심사하게 된다.

OMB는 이전부터 실무적으로 규제심사 활동은 하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규제 자체의 본질에 관한 심사라기 보다는 절차적·외형적 심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 후 1981년 행정명령 제12291호에서 각 연방기관은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것과, 관보에 게시하기 전에 OIRA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할 것이 요청되었다. 동 행정명령에 의해 OIRA에 의한 규제(및 해당 규제영향분석)안의 사전심사는 규제 자체의 본질에 대한 심사로 확대되게 되었다.<sup>18)</sup>



[그림 2] OIRA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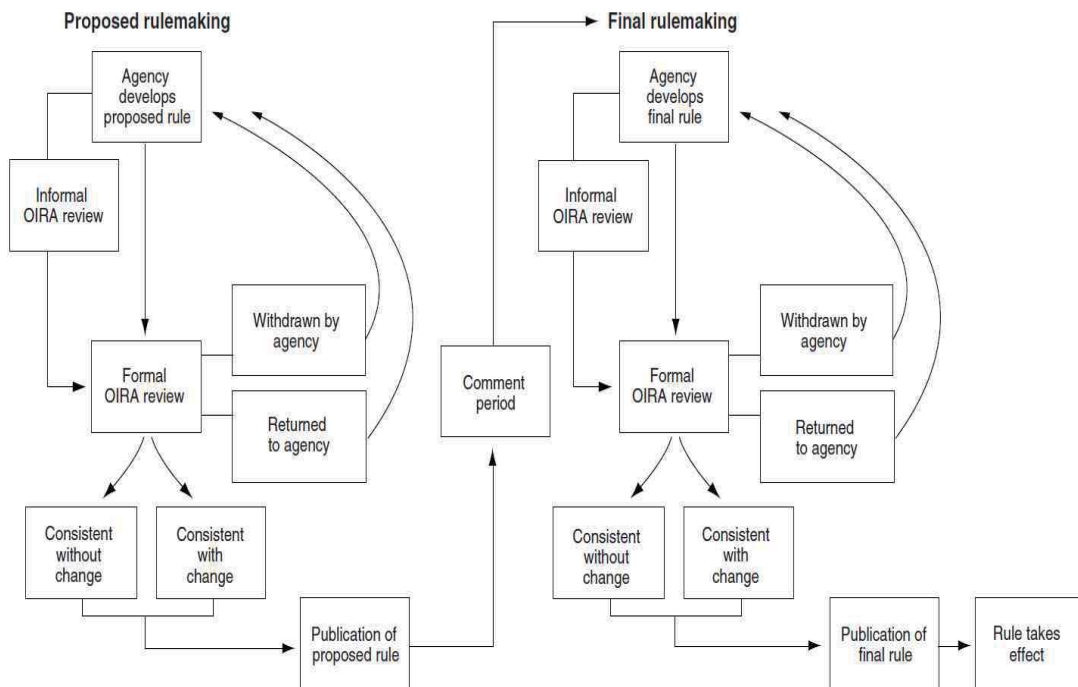
\* 출처: GAO(2003) Rulemaking: OMB' Role in Review of Agencies' Draft Rules and the Transparency of Those Reviews, 19면.

18) 2007년 현재 OIRA의 상근 직원은 46명으로, 보건·운수·일반행정 부서와 천연자원·에너지·농업부서가 직접적인 심사를 담당하고, 기타의 부서는 그 기술적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직원의 학문적 배경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들이다.

제 3 장 규제영향분석의 대상과 추진기관

그 후, 클린턴 행정부에서 1993년 행정명령 제12866호가 공표되고, 현재 미국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기본적 틀을 이루고 있다. 동 행정명령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제2b조에서 사전심사의 권한을 명확화하고, 제6조에서는 규제 소관청과 OIRA에서 담당할 기능, 역할에 관하여 정의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한편, 제3f조 및 제6b조에서 OIRA가 사전심사를 해야 하는 규제(및 그 규제영향분석)안의 대상을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이 있는 규제 등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OIRA에 의한 사전심사의 건수는 연간 500~700건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심사 기간 90일 이내 규칙’ ‘심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사전심사에 관한 제 규칙도 명문화되게 되었다.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하여 OIRA의 심사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OIRA의 심사과정

\* 출처: GAO(2003) Rulemaking: OMB' Role in Review of Agencies' Draft Rules and the Transparency of Those Reviews, 30면.

- 각 정부기관들은 관보에 게재하기 전에 최고 90일간의 심사를 위해서 중요규제의 초안을 OIRA에 제출한다.
- OIRA는 각 부처가 제안하는 연간 약 2000여개의 규제안 가운데 중요한 규제에 해당하는 500여개의 규제를 심사하며, 그 중 약 70여개의 규제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제’에 해당한다.
- OIRA는 심사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서와 규제안을 심사하고,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의 비용효과성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제출된 규제안이 행정명령 제12866호의 원칙과 대통령의 우선순위 방침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분석결과 규제안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때, 수정을 거부하거나 수정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출된 규제안에 대하여 기관에 대하여 반려통지(Return Letter)를 한다.

## 제 2 절 캐나다

### 1. 규제영향분석의 대상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은 정부로부터 개별 법률에 의해 특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제외한 모든 연방정부의 부처, 기관, 기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규제를 그 대상으로 한다. 캐나다에서 ‘규제’의 정의는 행정명령법(Statutory Instruments Act) 제 2조에서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회법(Act of Parliament)에 의해 수권된 입법권한의 행사로 제정되는 제정법령(statutory instrument)”를 의미한다.<sup>19)</sup>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은 법률을 포함하지 않으나 하위 법령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한다. 캐나다의 경우 의원 입법보다 각 부처가 법안을 형성하는 경우가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의회

---

19) Cabinet Directive on Regulatory Management, 2012, Sec. 3 참조.

의 입법과정을 거친 법률에 관해서 그 타당성 검토는 민주적 정치과정에 위임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한편,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의 규제의 선별은 2006년 5월 공표된 “규제 제안의 선별을 위한 체계(Framework for the Triage of Regulatory Submissions)”에서 제시된 기준을 통해 이루어진다. 동 체계에서는 규제의 제안을 “저”, “중”, “고”와 같이 규제의 중요성의 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선별절차를 마련하여 연방차원의 규제 제안을 그 중요도에 따라 취급하고 있다. 이는 2004년의 “규제절차가이드(Regulatory Process Guide)”에서 규정한 주요한(major) 또는 중요한(significant) 규제와 같은 정의를 대체하는 것이다.<sup>20)</sup>

이 때 중요성의 수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낮은 중요성

중요성이 낮은 제안은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허용되는 일상적(routine) 이거나 경제, 사람의 위생과 안전, 사회 및 윤리, 안전 보장, 환경 기타에 대한 악영향이 극히 적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다수의 경우 RAD는 관보에 대한 사전공표(pre-publication)의 면제에 대한 장관의 제언을 지지할 것이다.

- 중간 정도의 중요성

중간 정도의 중요성의 제안은 환경, 경제, 정부, 사회, 윤리, 안전 보장 및 사람의 위생과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목표 모집단(예: 산업 및 소규모 기업)에 약간의 비용 부과 또는 절약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중간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제안은 현재의 RIAS형식의 대상이 된다.

---

20) 종래에는 ‘중요한 규제안(major regulatory proposals)’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안이 캐나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세한 비용·편익분석이 요구되었다. 이 때 중요한 규제는 “비용의 현재가치가 5만 달러 이상” 또는 “비용의 현재가치가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의 것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을 가리킨다.

- 높은 중요성

중요성이 높은 제안은 환경, 경제, 사회, 윤리, 안전 보장, 위생 및 안전, 그리고 이해관계자(예: 산업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비용 또는 절약에 대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높은 중요성을 얻은 제안은 현재의 RIAS형식의 대상이 된다.

제안된 규제안의 선별을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단계: 규제 개발 절차의 초기에 규제 당국은 선별을 위한 질문표를 계호기중인 제안에 적용한다.
- 2 단계: 규제 당국은 선별을 위한 질문표를 담당의 규제관련업무과(Regulatory Affairs Division, RAD) 분석관에게 제출한다. 이 양식서는 규제의 제안에 책임을 가진 director(또는 그보다 상위의 사람)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부처가 RIAS를 기초하기 위한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RAD분석관이 입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양식서는 규제 개발 절차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완성된 후 RAD에 송부될 필요가 있다.
- 3 단계: 규제 당국 및 RAD는 중심적 기관의 이의 제기 기능(challenge function)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제안의 중요성의 수준 및 그것에 적절한 RIAS의 형식에 합의 및 그것들을 확인한다.
- 4 단계: 중요성이 낮은 제안에 대해서는 단축된 RIAS(부속 문서 2)가 작성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RAD는 사전 공표(pre-publication) 면제에 대해서 장관의 제언을 인정한다.

중요성이 중간 정도의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RIAS가 요구된다. 중간 정도의 중요성을 얻은 분야에 대해 곧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정량적인 정보에 의해 지지되는 정성적인 분석이 제공되어야 한다. 중요성이 높은 제안에 대해서는 만전의 RIAS가 요구된다. 중간 정도의 점을 얻은 분야에 대해 곧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정량적인 정

보에 지지되는 정성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높은 중요성을 얻은 분야에 대해서도 정량적 분석이 요구되고, 다음으로 정성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 2. 추진기관

### (1) 재무위원회 사무국

캐나다 재무위원회 사무국(TBS)의 규제관련 업무부문(Regulatory Affairs Sector)은 부처가 정책 및 규제안에 대해 제공하는 분석이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지침(Cabinet Directive on Streamlining Regulation)에 제시된 원칙과 방향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목적과 분석이 장관의 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지할 것을 확실케 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규제관련 업무부문은 새로운 제안, 기존의 정책과 정부의 정책과제(policy agenda) 사이의 정책의 일관성을 증진시키는데 책임이 있다.

규제관련 업무부문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 규제 제안의 개발 및 지침의 실시에 관하여 부처에 자문을 제공하고 지원한다.
- 장관과 총독의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내각위원회가 해당 과제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 규제 제안을 검토하고 규제분석의 질에 관하여 부처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언한다.
-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의 통제(regulatory governance)에 관한 전문 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 지침 및 그 실시의 효과를 평가(assess)한다.



한편, 규제관련 업무부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TBS의 타 부서와 협력한다.

- 규제 제안이 여러 자원의 운용 관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부처에 이들 규제활동에 관련된 다른 정부 관리정책에 관해 조언한다.

## (2) 추밀원 사무국

추밀원 사무국의 역할은 수단의 선택, 규제의 의미에 따라 내각지침 및 입법에 관한 지침(Cabinet Directive on Law-making)과의 일관성에 대하여 내각 및 법률 제안에 대한 각서를 평가한다. 또한, 추밀원은 정책 제안이 규제적인 측면을 가질지 모르는 경우에 규제관련업무 부문에 보고하고 관여시킬 책임이 있다.

## 제 4 장 규제영향분석의 내용(방법론) 및 사례

### 제 1 절 미 국

#### 1. 규제영향분석의 내용

##### (1) 개 관

OIRA에 의한 사전심사 기능은 규제수립 과정의 최종 단계에 이르기 전에 질 낮은 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행정명령 제12866호에 의해 연방 정부기관은 OIRA에 대해 규제안의 제출 및 심사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실제로 개별 정부기관에서는 공식적인 규제안의 제출, 심사 이전의 단계에서 비공식적으로 별도로 OIRA의 심사담당자와 접촉하여 상담 또는 비공식적 형태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sup>22)</sup>

행정명령 제1286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OIRA의 사전심사기능은 3단계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p>제1단계 : 규제 계획(Regulatory Plan)의 심사  제2단계 : 제안 단계 규제안 · 동 RIA의 심사  제3단계 : 최종 단계 규제안 · 동 RIA의 심사</p>
--

제1단계에서 연방 정부기관은 차년도 이후 작성을 예정하는 ‘중요한 규제’안에 관한 계획을 기재한 “규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1

21)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Making Sense of Regulation: 2001 Report to Congress on the Cost and Benefits of Regulations and Unfunded Mandates on State, Local and Tribal Entities, Dec. 2001 참조.

22) Curtis W. Copeland, Federal Rulemaking: The Role of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CRS Report, June 9, 2009, 14면 이하 참조.

일까지 OIRA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OIRA는 해당 계획에 기재된 규제 중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대상이 제대로 선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이 단계에서 판단한다. 당해 계획을 접수한 OIRA가 10일 이내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한 여기에 ‘중요한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된 규제안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다음 제2단계와 제3단계에서는 실시되는 시기가 의견수렴 전후라는 것을 제외하면, 공식심사과정에 큰 차이는 없다. OIRA는 연방정부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규제안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공식적인 심사를 하고, ‘수정없이 동의’, ‘수정부 동의’, ‘반려’ 중 하나의 회답을 하게 된다.

## (2) 심사의 기준

OIRA의 심사 기준은 ‘심사의 표준 체크리스트’에 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실체법·대통령의 우선사항·행정명령 제12866호의 원칙에 일치하는지 여부, 다른 연방정부기관의 정책이나 실무와 대립하지 않는지 등의 관점(행정명령 제12866호 제6b조의 규정)에서 심사하게 된다.

### 제 1 조. 규제의 이념 및 제원칙의 표명

#### (a) 규제의 기본원리(The Regulatory Philosophy)

연방행정기관은 법에 의해 요구되는 규제, 법을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또는 공중의 건강과 안전, 환경 혹은 미국시민의 복지의 보호 또는 개선에 있어서 민간시장의 중대한 실패 등의 절박한 공공의 필요성에서 결여될 수 없는 규제만을 공포하여야 한다. 규제의 가부 및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대안(alternative)을 포함하여, 실현가능한 규제상의 대안에 관련된 모든 비용 및 편익을 평가하여야 한다. 비용 및 편익은 정량적(quantifiable)으로 평가되는 것(예측으로서 유용한 최대한도로), 그리고 정량화는 곤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수인 비용 및 편익의 정성적(qualitative) 평가의 양 쪽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복수의 대

체적인 규제방법 중에서 선택함에 있어서는, 연방행정기관은 법률이 다른 규제방법을 요구하지 않는 한(잠재적인 경제상, 환경상, 공중위생 및 안전상, 그리고 그 밖의 우위성, 분배에 대한 영향 및 형평성을 포함한다) 순이익을 최대로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b) 규제의 기본원칙(The Principles of Regulation)**

연방행정기관의 규제 프로그램이 상기의 이념과 일치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행정기관은 법에서 인정된 한도내에서, 또한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원칙에 따라야 한다.

- (1) 각 행정기관은 (외부성, 시장력, 정보의 부족과 같은) 특유한 시장실패 또는 행정기관의 새로운 조치를 정당화하는 대응하고자 하는 그 밖의 특유한 문제(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실패를 포함한다)를 문서로 특정함과 아울러, 어떤 새로운 규제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의 평가를 가능하게 해 주는 그 문제의 중요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2) 각 행정기관은, 신규규제가 시정하려고 하는 문제는 기존의 규제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해 발생하거나 조장된 것인지를 검토함과 아울러, 의도한 규제의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또는 그 밖의 법률)를 수정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3) 각 행정기관은 이용자요금 혹은 거래가능한 허가와 같은,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또는 공중이 선택을 행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직접규제에 대한 이용가능한 대체안을 특정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4) 규제의 우선순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각 연방행정기관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신의 관할내의 여러 가지의 물질 또는 행위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risk)의 정도 및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 (5) 어떤 규제가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량의 이용가능한 방법이라고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당해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비용 대 효과가 높은 형태로 규제를 입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경우, 각 연방행정기관은 기술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일관성, 예상가능성, 실시 및 준수의 (정부, 규제대상조직 및 공중에 대한) 비용, 유연성, 배분에 대한 영향 및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6) 각 행정기관은 의도하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양 쪽을 평가하고, 일부의 비용과 편익은 수량화가 곤란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의도하는 규제의 편익이 그 비용을 정당화한다는 취지의 합리적인 결정에 기초하여서만 규제를 제안 또는 채용하여야 한다.

- (7) 각 행정기관은 가장 합리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정보, 그리고 의도하는 규제 또는 지침문서(guidance document)의 필요성 및 결과에 관한 그 밖의 정보에 기초하여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
- (8) 각 행정기관은 규제형식을 특정 및 평가하고, 규제대상의 조직이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준수를 위한 행동이나 방법을 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시가능한 한도내에서 성과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 (9) 행정기관은 주, 지방 및 부족정부에 중대 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규제요건을 부과하기 전에 가능한 한 당해 정부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각 행정기관은 특히 당해 임무를 실시하기 위한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포함하여, 연방규제가 주, 지방 및 부족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각 행정기관은 규제목표의 달성과 정합성을 가지고, 당해 정부조직에 특별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방행정기관은 연방의 규제행위와, 관련하는 주, 지방 및 부족의 규제기능 및 그 밖의 정부기능과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10) 각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의 다른 규제와 지침문서 또는 다른 연방 행정기관의 그것들과 대립하거나, 정합성이 취해지지 않거나 또는 중복하는 규제 및 지침문서를 피하여야 한다.
- (11) 각 행정기관은 특히, 그리고 실시가능한 범위내에서 누적적인 규제의 비용을 고려하고, 규제목표의 달성과 정합성을 가지며, 개인을 포함하는 사회, 여러 가지의 규모의 기업 및 그 밖의 조직(소규모의 지역사회 및 정부조직을 포함한다)에 가장 적은 부담을 과하는 규제 및 지침문서를 실시하여야 한다.
- (12) 각 행정기관은 불명확성 및 그 불명확성에 기인하는 소송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간결하고 알기 쉬운 규제 및 지침문서를 기초하여야 한다.

#### 제 6 조. 규제의 집중적 심사(Centralized Review of Regulations)

##### (b) OIRA의 책임(OIRA Responsibilities)

OIRA국장은 각 행정기관의 규제조치가 적용법, 대통령의 우선사항 및 본 행정명령에서 규정된 제원칙에 합치하도록, 또한 다른 행정기관의 정책 또는 조치와 모순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지도와 감독을 제공하여야 한다. OIRA는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7] 행정명령 제12866호의 기본원칙 등

### (3) 심사과정과 심사결과

심사과정에서는 제출된 규제안에 대하여 서면에 의하여서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OIRA의 심사관과 각 규제소관부처의 담당자간에 직접적으로 대면, 전화, email 등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또한, 대면에 의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안전에 따라서는 OIRA의 각 부서의 장 등이 동석하는 경우도 있으며, ②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OIRA내 다른 부서, 관계 기관(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환경문제인 경우 환경보호청, 에너지부, 농무부 등)에 의견조회를 하게 된다. 이러한 심사과정의 실질적 운영은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심사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심사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 규제소관부처에서 제출된 규제안에 대해 대체로 ‘수정없이 동의(consistent without change)’, ‘수정부 동의(consistent with change)’, ‘반려(returned)’의 3유형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수정유무를 불문하고 각 부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가 전체의 70%를 넘으며, 실제로 반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과거의 실적을 고려했을 때 전체의 3%에 미치지 못한다.<sup>23)</sup>

OIRA의 심사에 의한 반려에 관한 규정은 행정명령 제12666호 제6조 (b) (3)<sup>24)</sup>에 규정되어 있다. 동 조에서는 OIRA가 반려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한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 문서를 반려서(return letter)

23) 이에 관한 상세는 Curtis W. Copeland, Federal Rulemaking: The Role of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CRS Report, June 9, 2009, 11-14면 참조.

24) “(3) OIRA국장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재고를 요구하여 행정기관에 반려한 각각의 규제조치의 경우, OIRA 실장은 본 행정명령의 해당하는 조항을 시사하여 제출행정기관에 당해 반려의 서면에 의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반려의 근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OIRA국장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한다. 반례의 통지는 각 부처의 장 또는 고위급 관료에게 보내지는 동시에 인터넷상에서도 공개되고,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다.<sup>25)</sup>

#### (4) 사후평가

행정명령 제13563호의 제6조는 규정의 소급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소급(look back)” 조항을 가지고 있다.<sup>26)</sup> 동 행정명령에 의하면 행정명령의 발효 120일 이내에 각 기관은 법과 관련 자원 그리고 규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계획을 작성하여 OIRA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현존하는 주요 규제를 검토하여 수정, 확장, 간소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당해 기관의 규제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이게 하고 규제목적 달성을 경우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sup>27)</sup> 즉, 행정명령 제 13563호는 규칙을 적용하기 이전에는 그 결과뿐 아니라 비용과 혜택을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부 전반에 걸쳐 소급검토 및 분석 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소급분석을 수행하는 동안 규칙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25) 2001년 7월 OIRA의 장이 John Graham으로 바뀐에 따라, OIRA에 의한 심사방향이 그때까지 연방정부기관에 대한 조언자 입장에서 크게 바뀌었다고 한다. 실제로 OIRA의 심사결과 추이를 보면, 새로운 장이 취임한 2001년에 ‘반례’ 혹은 ‘부처에서의 철회’의 경우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했다. 이러한 점에 관해 2003년 GAO 보고서에서는 OIRA의 심사 스타일 당시 OIRA의 장이 규제책정과정에서 OIRA의 역할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GAO, Rulemaking: OMB’ Role in Review of Agencies’ Draft Rules and the Transparency of Those Reviews, 2003 참조.

26) EO 13563 Section 6(a) (“To facilitate the periodic review of existing significant regulations, agencies shall consider how best to promote retrospective analysis of rules that may be outmoded, ineffective, insufficient, or excessively burdensome, and to modify, streamline, expand, or repeal them in accordance with what has been learned. Such retrospective analyses, including supporting data, should be released online whenever possible.”).

27) EO 13563 Section 6(b).

## (5) OIRA의 의회에 대한 연차보고

OIRA는 1997년부터 매년 연방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에 관하여 “연방 규제의 비용·편익에 관한 의회에 대한 보고서(Report to the Congress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Federal Regulations)”를 작성하고 있다. 동 의회보고서는 행정명령 제12866호에서 규정한 권한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전심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아니다. 이는 2000년에 제정된 “규제를 알 권리에 관한 법률(Regulatory Right-to-Know Act)”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각 규제 소관 부처가 실시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비용과 편익이 정량화·금전가치화 되고 있던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연방정부가 도입, 유지하고 있는 주요한 규제가 발생시킨 총편익·총비용에 대해 연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고하는 것이다.<sup>28)</sup>

## 28) 규제를 알 권리에 관한 법률 제624조

(a) 2002년도 및 그 이후의 각 연도에 OMB의 장은 US Code 제31편 제1105조에 규정된 예산과 함께, 다음에 열거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설명문서 및 관련문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방 규제 및 서류 작업에 따른 총 연간 비용·편익(정량화 가능, 불가능 모두의 효과를 포함)의 추계치(다음의 범주에 의하는 것)

- (A) 총계
- (B) 연방정부 기관·동 프로그램별
- (C) 주요 규제별

(2) 주정부 및 지방 정부·부족 정부·소기업·임금·경제성장에 연방 규제가 미친 영향의 분석 결과

(3) 개혁을 위한 제언

(b) OMB 장은 본조 (a)에 규정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보고서를 고지를 거쳐 의견수렴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설정해야한다.

(c) OMB 장관은 본조의 이행시 각 부처에 아래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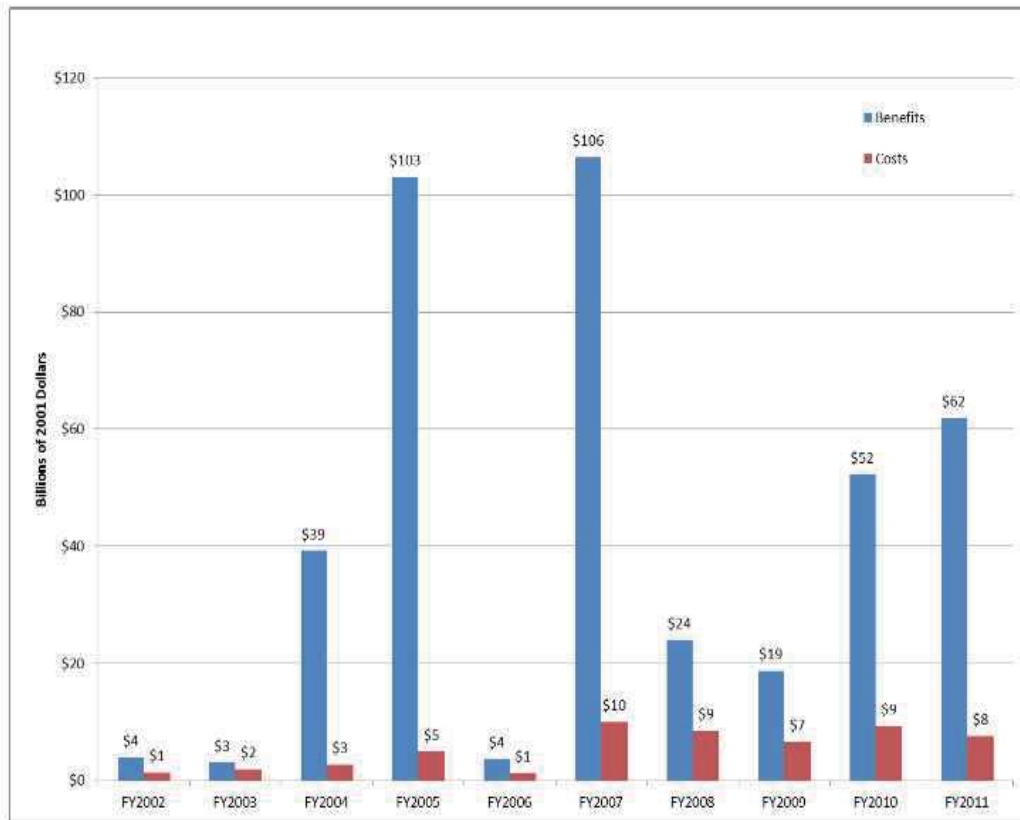
- (1) 비용·편익의 측정 방법
- (2) 집계표

(d) OMB 장은 본조에 규정된 지침, 개개의 집계표, 보고에 관하여 독립한 외부 주체에 의한 피어 리뷰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규제영향분석의 내용(방법론) 및 사례

매년 보고서의 제1장에서 미국에서 규제가 가져올 편익·비용의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연방정부 규제가 총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편익과 비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 함으로써 그 후의 규제개혁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의 제3장 이후가 매년 특정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연방정부 규제에 따른 비용·편익의 연도별 추계치

\* 출처: OMB(2012), 2012 Report to Congress on the Benefits and Costs of Federal Regulations and Unfunded Mandates on State, Local, and Tribal Entities

최근에는 행정명령 제13563호의 추가적 사항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연방 규정의 편익·비용에 관한 의회 보고서**

**PART I: 연방 규정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의회 보고서**

**CHAPTER I: 연방 규정의 편익과 비용**

- A. 지난 10년간 OMB에서 심사한 규제들의 연간 총편익과 총비용의 추계치
- B. 지난 10년간 OBB에서 심사한 규제들의 연간 편익과 비용의 경향
- C. 2011 회계연도에 주요한 규제의 편익과 비용의 추계치
- D. 연방 규제의 주, 지방, 부족 정부, 소기업, 임금,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CHAPTER II: 개혁을 위한 권고와 행정명령 제13563호의 실행에 관한 보고**

- A. 소급분석에 관한 문화: 성과의 장래의 진전
- B. 단순화, 조정, 불확실성의 제거
- C. Smart Disclosure
- D. 공중의 참여, 공개정부 파트너십, 국가실행계획
- E. 규제에 관한 공중의 권고 유도 및 취업 효과

**CHAPTER III: OMB의 정보에 관한 질 이니셔티브의 실행**

- A. 정보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
- B. 정부차원의 정보의 질 가이드라인
- C. 피어 리뷰를 위한 정보의 질 Bulletin

**PART II: 무재원 개혁법에 준수하는 기관에 대한 제16차 연차보고**

**CHAPTER IV: 중요한 규제 위임에 관한 심사**

- A.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B.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 C.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D.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 E. 보건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F.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 G. 공동규칙 제정(Joint Rulemakings)

부록 A: 편익과 비용의 계산
부록 B: 2000-2001 주요 규칙의 편익과 비용
부록 C: 독립규제기관에 의한 주요 규칙에 대한 규제분석에 관한 정보
부록 D: 행정부에 의한 주요 규칙의 편익과 비용
...

## 2. 규제영향분석 사례<sup>29)</sup>

### (1) 목적 및 배경

동 사례는 도로 외 대형 엔진 및 레크리에이션 엔진(해양·육상)의 배출 규제의 도입에 관한 규제영향분석이다. 사례의 대상이 된 규제는 국민의 건강 및 생활에 위해를 가져오는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로 이외에서 이용되는 엔진(nonroad engine)에 대해서도 배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규제의 구체적인 대상은 포크레인, 공항의 견인차(airport tugs)등 산업용엔진(spark-ignition industrial engines), 스노우 모빌 등의 레저용 차량, 해양에서의 디젤 엔진으로 대상이 되는 엔진에서의 오염물질에 대해 각각 배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 편익요소

편 익	편익요소	산정방법
유지비의 절감	규제에 적합한 엔진이 증가함으로써 유지비의 절감	<u>연간 4억 4천 3백만 달러</u> 규제에 적합한 엔진은 고연비의 엔진으로 휘발유 소비가 감소하며 이에 따라 비용절감이 이루어짐

29)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Control of Emissions From Nonroad Large Spark Ignition Engines and recreational Engines(Marine and Land-Based).

편 익	편익요소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계는 제조업체로부터의 정보나 환경보호청(EPA)에 의한 시험을 토대로 한 기술 평가에 근거</li> <li>• 대상 기관별로 해당 조치 도입부터 20년의 연간 평균 휘발유 절감량×휘발유 비용에 절감액을 추계</li> <li>• 대상 기관 전체에서 감소할 수 있는 휘발유의 양은 730만 갤런/년 일 것으로 추계</li> </ul>
건강피해의 감소 및 후생의 개선	오염물질삭감에 의한 건강피해의 감소나 후생의 개선에 의한 편익	<p><u>정성 평가</u></p> <p>이 조치에 의해 주로 감소하는 것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임</p> <p>이들 대기 오염 물질 감소로 연명 효과가 있으며, 만성기관지염, 호흡기나 심장 질환, 천식 등 질병의 감소, 근로 시간과 생산성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음</p>

(3) 비용요소

비 용	비용요소	산정방법
제조비용의 증가	배출기준을 준수한 엔진의 제조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변동비(재료 등) 및 고정비(연구개발, 제조설비갱신 등)	<p><u>연간 1841만 달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 추계는 제조업자로부터의 정보나 환경보호청에 의한 시험을 토대로 한 기술 평가에 근거</li> <li>• 대상 기관마다 1대당 추가 제조비용을 추산하고 이에 근거한 업체 전체의 연간 비용을 추계</li> <li>• 연간 비용은 해당 조치 도입 후 20년간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li> </ul>

제 4 장 규제영향분석의 내용(방법론) 및 사례

비 용	비용요소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제조업자는 최초 5년간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상정하고 5년째 이후는 고정비용을 고려하지 않음</li> <li>• 제조업자의 학습 효과(계속적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것에 의해서 제조 방법을 혁신해 보다 저비용으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의해 변동비는 3년째 이후 20% 감소해 6년 이후 또 다시 20% 감소</li> </ul>

(4) 결 론

결 론	비용요소
순편익 등	상기와 같은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CO <sub>2</sub> 배출 감소 1톤당 비용이 낮은 것 즉,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점에서 편익이 비용을 크게 상회함

(5)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심사

항 목	내 용
비용·편익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회계적”영향(공학 기술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정보는 표시되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되는 비용·편익 분석은 실시되지 않았음</li> <li>• 각 대상 엔진은 다양한 기능(다용도성, 신뢰성, 소형 등)이 있으며,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가격과 소비자 선택이 달라지지만 이러한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li> <li>• 경제적 비용의 분석에서, 소비자 잉여의 감소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li> </ul>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OMB의 가이드라인에서 요구되고 있는 정량 평가 혹은 금전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함</li> </ul>
대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MB에 가이드라인 등에서 요구되는 대체안의 분석이 실시되지 않았음</li> <li>• 다른 기준치, 도입 스케줄, 대상 기관의 범위 등 대안을 제시하고 분석을 실시해야 함</li> </ul>

### (6) 심사 이후 부처의 수정

환경청에서는 OMB에 의한 심사의견을 수렴하여 이후 발간한 개정판에서는 해당 조치에 의한 편익의 금전가치평가와 소비자 잉여 감소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고, 기준치의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제 2 절 캐나다

### 1. 규제영향분석의 내용

#### (1) 심사의 기준

연방규제절차에 관련하는 모든 부처(all departments and agencies)는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한다.<sup>30)</sup> 따라서 공무원은 규제의 개발, 실행, 평가 및 검토에 이르는 규제의 전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내각 지침을 준수할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규제절차에

30) 전술한 바와 같이, 캐나다에서는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규칙을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내각 지침(Cabinet Directive on Streamlining Regulation)으로서 2007년 4월 개정하고 이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동 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의 내용을 살펴본다.

서 동 지침은 담당 공무원을 위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를 제시한다.<sup>31)</sup>

규제에 임하는 때 관계 부처는 내각 및 재무위원회의 지시, 그리고 행정명령법(Statutory Instruments Act), 임대료 법(User Fees Act), 재정 관리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 입법에 관한 지침(Cabinet Directive on Law-making),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제안의 환경 평가에 관한 지침(Cabinet Directive o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Policy, Plan and Program Proposal), 위험에 대한 과학적인 의사 결정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적용 체계(A Framework for the Application of Precaution in Science-based Decision Making about Risk), 과학 및 기술 권고를 위한 체계: 정부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 권고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원칙 및 지침(A Framework for Science and Technology Advice: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Effective Use of Science and Technology Advice in Government Decision Making)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규제 절차의 요구 사항

규제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부처에서는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초기단계에서 규제 제안을 평가하며, 이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된다.

- 규제에 의한 캐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안보, 환경 및 사회적 및 경제적인 복지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 정부, 기업 또는 캐나다 국민에게 비용의 부담 또는 절약 가능성 및 캐나다 경제와 국제 경쟁력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 다른 연방 부처, 캐나다내의 다른 정부, 또는 캐나다 외교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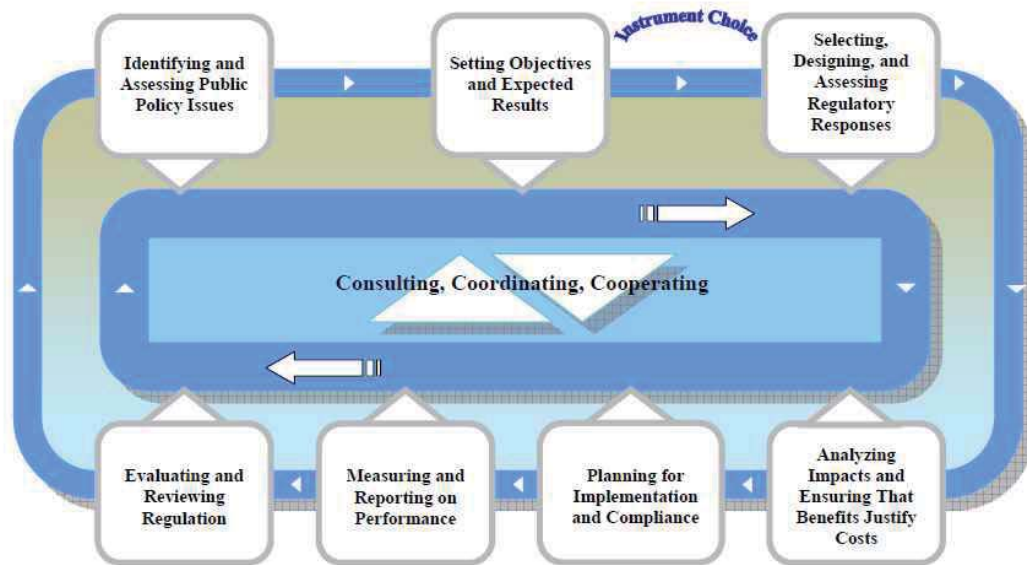
---

31)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도구들은 <http://www.tbs-sct.gc.ca/rtrap-parfa/guides-eng.asp>에서 제공되고 있다.

-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캐나다 국민 간의 관심 및 지원의 정도

### (3) 규제 협의(Regulatory consultation)

부처는 규제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이해 관계자 및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식별하고, 개방적이고 균형잡힌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처에서는 1) 가능한 증거, 과학 또는 지식 기반 공공정책 과제와 성격과 의미에 대하여 캐나다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2) 정책목표의 개발에 캐나다 국민을 포함하여야 하며, 3)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조직하고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명백한 방법으로 과정과 일정을 설정하며, 4) 협의의 성과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우선순위로 고려된 것에 대하여 캐나다 국민과 영향을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림 5] 규제협의 절차

\* 출처: The Board of Canada Secretariat, *Guidelines for Effective Regulatory Consultations*(2007), 2면.



부처는 의견수렴 기간 동안을 통해 그리고 받은 의견을 고려하기 위하여 제안을 관보의 제1부(Canada Gazette, Part I)에 공표하여야 한다. 표준적인 의견수렴 기간은 30일이지만, 입법요건, 국제적인 의무, 기타 고려사항을 근거하여 차이를 둘 수 있다.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롭거나 변경된 기술 규정의 제안내용은 최소 75일의 의견수렴 기간이 요구된다.

#### (4) 공공정책과제(public policy issues)의 특정과 평가

부처는 잠재적인 위험을 포함한 공공정책 과제를 평가하고, 활용가능한 최선의 증거 및 지식을 통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공공정책 과제를 평가하거나 문서화하는 경우, 부처는 1) 긴급하거나, 즉시적인 것 그리고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공공정책과제의 원인과 맥락을 분석하여야 하며, 2)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주와 지역정부, 외국 또는 국제조직의 관련 증거기반의 평가, 분석, 표준 및 분류시스템을 검토하고, 3) 과제의 성격과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의사결정자와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4) 공공정책 과제의 과학적·경험적 증거, 불확실성, 윤리적 고려 사항 및 국민의 의견을 설명한다.<sup>32)</sup>

#### (5) 공공정책의 목표 설정

정책 과제가 평가되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시점에서 부처는 공공정책의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1) 공공정책 과제와 그 원인에 해당하는 측정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2) 법률 및 정부의 우선순위가 타당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결점을 구축한다.

---

32) A Framework for the Application of Precaution in Science-based Decision Making about Risk, <http://www.pco-bcp.gc.ca/index.asp?lang=eng&page=information&sub=publications&doc=precaution/precaution-eng.htm> 참조.

## (6) 규제대응 선택, 설계 및 평가

### 가. 정부수단의 적절한 혼용을 선택

부처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및 비규제적 수단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에서는 1)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잠재적인 포인트(potential points)를 확인하고, 2) 공공정책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기관 및 당사자를 식별하며, 3) 규제 및 비규제적인 방안을 포함한 적절한 수단 또는 수단의 혼용방안을 파악하고, 규제 제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 적용을 정당화한다. 또한, 4) 규제의 대응이 정책의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명시하고, 5) 규제의 대응이 위험의 정도 및 유형과 균형있는 것임을 명시해야 하고, 6) 규제의 대응이 그 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분야에 부당한(unduly) 영향은 없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 나. 법적 의미의 평가

규제를 설계할 때 부처는 캐나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지원을 받아, 제안의 법적 의미를 평가하고 법적 타당성을 확실히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부처는 규제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률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며,
- 1867년 헌법과 1982년 헌법(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및 제35조에서 발생하는 원주민과 조약의 권리에 관련된 모든 의무를 포함하는)과 1960년 캐나다 인권 선언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며,

-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지침의 실시라는 제목 하에 문서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과 함께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조정 및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sup>33)</sup>

연방부처는 캐나다인과 경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누적적이며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의 개발 및 실시를 공동으로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부처는 1) 제안된 규제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진 다른 연방 부처를 파악하고 협의한다; 2) 규제되는 분야의 유사한 또는 관련 규제 요구 사항 - 기존의 또는 제안된 것을 특정한다; 3) 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요구 사항을 평가(assess)하고 및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보완 및 협력적인 방법을 개발한다; 4) 복잡성과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의 실시 및 관리를 조정한다.

라. 규제의 편익 및 비용 분석

규제의 당위 및 규제의 방법을 결정할 때 부처는 정부의 부작위를 포함하여 규제적 그리고 비규제적 조치에 관한 비용·편익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분석은 정량적 지표 그리고 이것이 어려운 경우 정성적 지표를 포함한다. 이러한 영향의 분석은 경제적인 효율성이 유일한 공공정책의 목표가 아닌 경우에도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순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을 평가할 때 부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안된 규제 및 실현 가능한 대안이 캐나다 시민, 기업 및 정부에 미치는 잠재적인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

---

33) <http://www.iccs-isac.org> 참조.

-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어떻게 관련된 당사자, 경제의 개별 부분, 그리고 캐나다의 지역에 걸쳐 분산되는지 확인

마. 선택사항에 대한 제언(Recommending an option)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사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부처에서는 누적적인 행정부담을 제한하며, 캐나다인과 기업에 대하여 가능한 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과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가장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특정한다. 그리고 환경, 캐나다인의 건강과 안전, 경쟁, 무역 및 투자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식별한다.<sup>34)</sup>

(7) 실행, 준수, 시행(implementation, compliance, and enforcement)을 위한 계획

부처는 규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처리하고,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준수와 시행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규제의 효과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8) 규제의 측정, 평가 및 검토

부처는 지속적으로 초기의 정책목표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속적 기반의 규제 체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는 재무위원회의 평가에 관한 정책(Policy on Evaluation)에서 확립된 시점과 사이클에 따라 규제프로그램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를 위해서 성과측정 및 평가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34) Departments and agencies should consult the *Cabinet Directive o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Policy, Plan and Program Proposals* for further guidance on conduc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 2. 규제개혁과 최근의 가이드라인

### (1) 개 관

캐나다에서는 2006년의 정권 교체 후 보수당 새 정부가 새로운 장기경제계획을 마련하면서, 10년 이내에 정부의 순 채무를 없애는 것과 모든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감세를 실시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장기 경제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07년 예산에서 3가지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sup>35)</sup>

이와 관련해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내각 지침(Cabinet Directive on Streamlining Regulation: CDSR)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내각지침은 2년간에 걸친 관계 기관 및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책정된 것으로, 1999년 정부 규제 방침(Government of Canada Regulatory Policy)을 대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보다 포괄적인 규제 관리의 접근법을 취하는 규제의 책정, 실시, 평가 및 검토에 관한 특정 요구 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 (2) 최근의 가이드라인

규제영향평가서(Regulatory Impact Analysis Statement: RIAS)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의 이니셔티브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실적에 근거한 규제 시스템의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07년 4월 1일 시행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내각 지침(Cabinet Directive on Streamlining Regulation)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35) 1) 실적에 근거한 규제 시스템의 구축, 2) 서류 작성 부하를 20% 삭감, 3) 대규모 국가 자원 프로젝트 검토의 합리화.

- (A) “캐나다의 비용·편익 분석 가이드: 규제 제안”(2007)
- (B) “정부 해당 작업을 위한 평가, 선택, 실행 도구”(2007)
- (C)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가이드라인”(2007)
- (D) “규제에 관한 국제 의무와 협력에 관한 가이드라인”(2007)

(3) “캐나다의 비용 편익 분석 가이드: 규제 제안”(2007)<sup>36)</sup>

동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규제 합리화를 위한 내각 지침의 요건에 따라 각 부처가 규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영향분석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실시 방법을 해설하고 있다.

가. 1단계: 과제, 위험, 기준점 시나리오의 특정

항 목	내 용
A. 과 제	정책 과제의 특징이나 근원을 파악한다.
B. 증분 효과	정책의 영향을 특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제에 대한 정책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C. 기준점·시나리오 설정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점 설정을 필수로 하고 있다. 기준점은 아무런 대책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고 산출된다.

36) *Canadian Cost-Benefit Analysis Guide: Regulatory Proposals*, <http://www.tbs-sct.gc.ca/rtrap-parfa/analys/analys-eng.pdf>.

제 4 장 규제영향분석의 내용(방법론) 및 사례

항 목	내 용
D. 위험 평가	건강과 환경 분야에서는 특히 위험 평가가 필요하다. 기준을 설정할 때 위험의 영향도 고려해야 하므로 위험 평가는 중요하다.

나. 2단계: 목표 설정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 필요한 경우 그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 판단에 있어 정부의 개입은 많은 관계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계자와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3단계: 규제·비규제의 대체안의 책정

현재의 안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보이기 위해 규제를 사용한 경우, 규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몇 가지의 규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대체안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라. 4단계: 편익과 비용의 평가

항 목	내 용
A. 중요한 영향의 특정	<p>영향을 파악할 때 다음과 같이 세 단계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각 단계는 대상 분야의 전문가와의 상담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비규제의 대안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특정한다.</li> <li>- 이들의 영향에 대해 영향도를 결정하는 기본적 변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한다.</li> <li>- 기본적 변수의 추이를 예측하고 개입에 의해 만들어진 편익과 비용을 예측한다.</li> </ul>

항 목		내 용
B. 편익 측정		<p>편익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지불 의사 금액(WTP)이 있다. 경쟁 시장에서 왜곡이 없을 경우, 시장 가격이 참고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려가 필요하다.</p> <p>WTP는 소비자 잉여의 개념과 깊이 관계하고 있다. 규제에 의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잉여는 내려가지만 이에 대해서는 비용에도 영향을 주므로 중복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p> <p>환경, 건강, 안전·안심과 같은 편익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을 참고로 할 수 없으므로 정량화·금전화 하는 것이 어렵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정량화·금전화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하므로 다른 규제영향평가서를 참고로 정량화·금전화를 산정한다.</p> <p>편익을 누릴 대상과 비용 부담의 대상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고, 이들이 상쇄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하여야 한다.</p> <p>각 선택 사항의 편익에 대해서는 기준선과의 차이로 측정될 필요가 있다.</p>
	B-1. 편익측정 방법	시장 가격을 참고하는 방법, 현시선호법과 같은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B-2. 주요편익 항목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편익을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강분야에서는 통계적 생명 가치(Value of Statistical Lives: VSL)와 같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예시하고 있다.
	B-3. 금전화가 어려운 편익의 취급	편익을 금전화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금전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계량적 데이터를 모두 목록화 하고, 금전화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4 장 규제영향분석의 내용(방법론) 및 사례

항 목		내 용
	B-4. 불확실성과 위험의 취급	과학적 지식, 기술 진화,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동 등에 의해서 생기는 규제의 성과에 대해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대응을 나타내고 있다.
C. 비용 측정		기업 등의 지급비용과 정부의 지급비용으로 나누어 각각의 비용 측정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D. 선정 기준		현재가치나 내부수익률과 같은 각 선택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소개하고 있다.
E. 비용 효과 분석		편익을 금전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없었던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F.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각 이해관계자가 규제에 의해 이익을 받는지 불이익을 입는지, 또 이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상승 등 관계자마다 고려되어야 할 규제에 의해 영향을 예시하고 있다.
G. 할인율		할인율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국가재정위원회 사무국(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TBS)에서는 할인율 10%가 권장되고 있다.

마. 5단계: 규제영향분석서의 준비

- 템플릿을 이용하여 비용 편익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서류(section A)를 준비한다.
- 규제관계자의 영향 분석결과를 나타내는 서류(section B)를 준비한다.

## Accounting Statement Section A: Cost-Benefit Analysis for Each Option

## PART I: DETERMINISTIC CASE

Category	Year 1	Year 2	Year 3	...	Total npv	Annualized value
<b>A. Cost-Benefit Analysis</b>						
<b>Monetized</b>						
Benefits						
Costs						
Net Benefits						
<b>Quantified but Unmonetized</b>						
Benefits						
Costs						
<b>Unquantified</b>						
Benefits Described					n/a	n/a
Costs Described					n/a	n/a
<b>B. Cost-Effectiveness Analysis</b>						n/a
<b>Benefits (quantified but unmonetized)</b>						n/a
<b>Costs (monetized)</b>						n/a
<b>Cost-Effectiveness Ratio</b>						n/a

## PART II: DEALING WITH RISK/UNCERTAINTY

Category	Values of risk variable (range)	Type of probability distribution
<b>Key Parameters:</b>		
	Risk Variable 1:	
	Risk Variable 2:	
<b>Monte Carlo Simulation Results</b>	<b>Statistic Values of the Project Outcome</b>	
	Expected Value:	
	Range of the Outcome:	
	Variance:	

## [표 8] 비용·편익분석서 등 양식

\* 출처: The Board of Canada Secretariat Canadian Cost-Benefit Analysis Guide: Regulatory Proposals, 2007, 42면.

Accounting Statement Section B: Stakeholder Analysis for Each Option

Category	Year 1	Year 2	Year 3	...	Total npv	Annualized
<b>Impacts on Business</b>						
Small Firms						
Medium-Sized Firms						
Large Firms						
<b>Impacts on Consumers and Households</b>						
<b>Impacts on Governments</b>						
Federal						
Others						
<b>Impacts on the Environment</b>						
<b>Impacts by Region</b>						
Atlantic						
Quebec						
Ontario						
Prairies						
British Columbia						

[표 9]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분석서 양식

\* 출처: The Board of Canada Secretariat(2007) Canadian Cost-Benefit Analysis Guide: Regulatory Proposals, 43면.

(4) 정부조치에 대한 평가, 선택, 실행 수단<sup>37)</sup>

가. 목적

동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규제 합리화를 위한 내각 지침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달성하는데 있어 유효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37) The Board of Canada Secretariat, *Assessing, Selecting, and Implementing Instruments for Government Action*, 2007

## 나. 구 성

가이드라인은 제1장과 제2장으로 나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정책수단의 선택문제에 대한 배경이나 상황을 해설하고 있다. 정책수단을 소개해 정책수단의 선택이 어떻게 정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정책 수단의 평가, 선택, 실행의 적절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분석적인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 (5) 효과적인 협의를 위한 가이드라인<sup>38)</sup>

#### 가. 목 적

본 가이드라인은 협의와 관련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내각지침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고, 규제의 생애주기를 통하여 효과적인 협의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나. 목 적

가이드라인에서는 협의의 단계를 12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단 계	발 취
1. 협의계획의 초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방안이 추진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li> <li>· 규제안의 개발 이유(경제적, 사회적 편익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li> </ul>
2. 내부 조사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안에 대한 고위급 공무원의 승인이 확정되어 있는가</li> <li>· 규제 방안에 대한 정부의 협력이 확정되어 있는가</li> </ul>

38) The Board of Canada Secretariat, *Guidelines for Effective Regulatory Consultations*, 2007.

제 4 장 규제영향분석의 내용(방법론) 및 사례

단 계	발 취
3. 외부 조사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의 의견조사, 시민 등에의 영향의 정도 등을 통해) 공중의 관심 정도를 확인하고 있는가</li> <li>· 일반 공중이 이 과제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고 있는가</li> </ul>
4. 현실적인 일정 책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의 지식, 이해, 전문성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가</li> <li>·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어떤 정보가 개발 수집될 필요가 있는지를 특정하고 있는가</li> </ul>
5. 협의 계획의 책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내의 관련 정책 부서와 규제안에 대해 논의하는가</li> <li>· 부처내의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했는가</li> </ul>
6. 협의 수단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에 동일한 협의에서 이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가</li> <li>· 각 협의 수단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있는가</li> </ul>
7. 이해관계자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는가</li> <li>· 참가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책정하고 있는가</li> </ul>
8. 협의를 위한 예산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 가능한 예산을 파악하고 있는가</li> <li>· 협이가 제3자에 의해 촉진되는지를 확정하고 있는가</li> </ul>
9. 지속적인 평가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에서 기대되는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가</li> <li>· 협의를 실시하기 위한 대표적인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가</li> </ul>
10. 협의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인 평가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대한 성과를 얻었는가</li> <li>· 다른 그룹이나 개인에 대해 취한 방법은 적절했었는가</li> </ul>
11. 중립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최신의 정보의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자에 대해 과학적 지식을 포함한 지식 수준, 전문지식을 파악하고 있는가</li> <li>·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li> </ul>

단 계	발 취
12. 협의 과정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대하는 협의의 성과를 공유하며 이에 따라 참가자가 행동하도록 촉진하고 있는가</li> <li>· 행동 규범을 확립하고 있는가</li> </ul>

[표 10] 효과적인 협의를 위한 체크리스트(발취)

체크리스트의 실제적인 모습은 아래와 같다.

**Checklist 1**

A clear statement of purpose at the beginning of the consultation plan should:

Yes    N/A

- Explain the problem the proposed regulations are addressing
- Explain why the regulations are being developed (i.e. economic, social, or safety benefits)
- Define what the proposed regulations will do
- Describe how the regulations will be developed (i.e. process to be followed)
- Outline the scope of the regulatory consultation process (i.e. what can and cannot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consultations)
- Identify the authority for the regulations
- Be written in plain, easy-to-understand language

[표 11] 협의를 위한 체크리스트(예시)

\* 출처: The Board of Canada Secretariat, *Guidelines for Effective Regulatory Consultations*, 2007.

### 3. 규제영향분석 사례<sup>39)</sup>

#### (1) 대상 및 배경

동 사례는 에너지 효율성제고를 위한 규제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RIA)에 관한 것으로, 규제의 목적은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서 캐나다의 온실가스(Greenhouse gas)의 목표치를 달성하려는데 있었다. 에너지 효율성제고를 위한 규제개정을 통하여 15개의 에너지 사용제품들에 대한 에너지효율성의 최소 기준치를 만족하도록 규제하고 2개의 에너지 사용제품들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성의 최소 기준치를 높였다.

#### (2) 규제영향분석의 과정

이 규제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RIA)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 시	내 용
1996년	연방규제계획서(Federal Regulatory Plan)에 규제계획을 사전에 고지
1996년	캐나다 연방자원부에서 자료수집과 예비분석을 위해서 자문위원(consultant) 채용
1997년 6월	캐나다 연방자원부에서 제안된 규제안의 요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안이 예비공고되기 전에 규제안을 수정함

39) 이하의 사례는 유성민, 캐나다 규제영향분석(RIA)에서의 법경제학적 방법론 연구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2, 57-60면의 사례 소개를 재구성한 것이다.

일 시	내 용
1998년 7월	규제안을 관보인 Canada Gazette 1부에 예비공고. 동시에 규제안을 2,000개의 이해관계기관에 직접 배포
1999년 1월	최종 규제안을 관보인 Canada Gazette 2부에 공포

### (3) 규제영향분석의 방법

#### 가. 비용·편익분석

구체적인 규제영향분석(RIA)의 방법론으로는 비용·편익분석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 규제개정안의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는 방법론과 가정들에 관한 명확한 정의들이 주어져 있었다.<sup>40)</sup>

편익의 가치는 에너지 사용제품들의 평균수명기간 동안 절약되는 에너지의 화폐가치로 추정하고, 비용은 규제안에 제시된 최소한의 에너지효율성을 가진 에너지 사용제품들을 생산할 때 기존의 에너지 사용제품의 생산비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추정했다.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제한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측정했다. 이 때 사용된 자료들은 연방 자원부에서 공식적으로 예측한 2020년까지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예측치들과 평균적인 에너지 가격의 예측치들, 그리고 제품들의 생산비용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자료들이 포함된 연방자원부의 공식자료인 제품기술자료(Equipment Technology Database)이다.

40) 예를 들어서 규제가 없는 경우(base case)의 미래의 에너지 사용에 관한 가정들,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의 가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했다. 즉 편익의 현재 가치, 비용의 현재가치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할 때에 5%, 7% 그리고 10%의 서로 다른 할인율을 사용하는 경우와 미래의 에너지 가격에 있어서 에너지 가격이 낮은 경우, 중간 가격의 경우, 높은 가격의 경우를 나누어 민감도 분석을 했는데 할인율과 에너지 가격의 조합들이 총 9가지의 경우들을 대상으로 민감도 분석을 했다.



#### 나. 의견수렴

의견수렴 과정도 해당 부처에서 규제안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절차였다.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산업협회(Industry Association), 연구소, 개별 기업들로부터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고 제안된 규제안에 대한 의견들도 들었다. 구체적으로 우편을 통한 방법, 인터넷을 통한 방법, 기업들의 상품전시회(trade show)를 통한 방법, 정부의 게시물(information bulletin)을 통한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규제영향분석서(RIAS)에서는 의견수렴의 과정을 통하여 규제내용이 변경된 사항들이 설명되었다. 관보 제1부에 예비공고를 한 후에 2,000여개의 이해관계기관들에게 제안된 규제안이 발송되었으며 그에 따라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었고 수렴된 의견들이 규제영향분석서에 잘 요약되어 있었으며 수렴된 의견들에 대한 주무부서인 연방자원부의 답변들도 규제영향분석서(RIAS)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제 5 장 결 론

미국과 캐나다는 규제영향분석의 운용에 있어 가장 오래된 경험을 가진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규제영향분석이 태동되면서 규제완화와 규제개혁을 위하여 특정한 규제대안의 효과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정책결정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개선을 통해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형태나 입법환경에 차이가 있는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논의의 시사점을 직접적으로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입법평가’를 새롭게 입안되거나 현존하는 법령의 편익, 비용, 그리고 다양한 효과를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도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국과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운용과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의 질 확보에 관한 노력은 국내의 입법평가 제도화에 관한 논의에도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입법평가 제도화의 논의 중 하나의 쟁점인 평가의 대상에 관한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과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은 의회 법률을 제외한 행정기관의 하위법령이다. 그리고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이 되는 하위법령 역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여, 평가의 내용에도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종래 금액기준의 중요한(significant) 규제라는 개념을 폐기하고 환경, 경제, 사회, 윤리, 안전 보장, 위생 및 안전, 그리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의 크기에 따라 평가대상의 선별 및 평가의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의 입법평가의 대상에 관한 논의에서도 법률 또는 하위법령이라고 하는 획일적 판단보다는 해당 입법이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따라 평가대상으로서의 선별 또는 평가내용을 달리하여 평가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 단계에서의 협의적 방법(consultation)의 확보 방안에 관한 문제이다. 종래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하는 정량적 방법론 전통을 중시하던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최근에는 협의적 방법이 규제영향분석시 중요한 단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행정명령 제13563호를 통해 규제제정 과정에서 타부처,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 그리고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입법평가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간의 의견조정 메카니즘 및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전적 입법평가와 사후적 입법평가의 관계 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과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은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사후분석에 관한 것이다. 즉, 규제가 도입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규제의 준수상황이나 유효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해당 규제의 운용을 통하여 의도했던 성과가 실현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규제를 재조정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종전 규제의 사전심사에 관한 평가에 중점을 둔 규제영향분석 제도가 규제의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규제를 평가대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의 입법평가 제도화의 논의에서도 이와 같이 ‘입법의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입법평가 제도의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점이 투영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국회입법조사처, CRS 미국 의회조사처, 2009. 1.
- 김수경, 미국 연방 행정입법지침과 규제평가절차,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자료 08-05, 2008. 10.
- 김정해, 임준형, 박형준,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12.
- 김주찬,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0. 10.
- 김현수·조영기,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사례 연구 - 미국 연방과 산법 개정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 박영도·한귀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II] - 미국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 4.
- 유성민, 캐나다 규제영향분석(RIA)에서의 법경제학적 방법론 연구: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2-24-16, 2012. 10.
- 이성우,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의 실용적 체계화, 한국행정연구원, 2003. 12.
- 이혁우 외 3인,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규제연구 제20권 제1호, 2011. 6.
- 정창화,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3. 12.

## 참 고 문 헌

- 최유성, 선진국 규제영향분석 제도 비교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3. 12.
- 최윤철, 국회에서의 입법평가 제도화 - 국회 입법활동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09. 12. 31.

## 2. 국외문헌

- Cavan O'Connor Close and Dominic J. Mancini, Comparison of US and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on Regulatory Impact Assessment/Analysis, Industrial Policy and Economic Reforms Papers No.3, 2007.
- CRS, Congressional Oversight Manual, June 10, 2011.
- CRS, Cost-Benefit and Other Analysis Requirements in the Rulemaking Process, August 20, 2011.
- CRS, Federal Rulemaking: The Role of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June 9, 2009.
- GAO, Designing Evaluations 2012 Revision, GAO-12-208G, 2012. 1.
- GAO, Program Evaluation: An Evaluation Culture and Collaborative Partnerships Help Build Agency Capacity, GAO-03-454 (May 2003).
- GAO, The Evaluation Synthesis, 1992. 3.
- Gary Marchant, The Impact of RIA on Regulatory Reform in the U.S., KLRI 22nd Anniversary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 2012.
- Jim Tozzi, OIRA's Formative Years: The Historical Record of Centralized Regulatory Review Proceeding OIRA's Founding, 63 Admin. L. Rev. (Special Edition) 37 (2011).

- John Contrubis, Executive Orders and Proclam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95-722A, March 9, 1999.
- John Holdren, Memorandum for the Heads of Agencies and Departments, Scientific Integrity (December 17, 2010).
- OMB,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and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February 2, 2011).
- Reforming Regulatory Impact Analysis (Winston Harrington et al., ed, 2009).
- Scott Jacobs, Current Trends in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e Challenges of Mainstreaming RIA into Policymaking (May 30, 2006).
- Scott Jacobs,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Regulatory Process, Method, and Co-operation: Lessons for Canada from International Trends, PRI Project North American Linkages, 2006. 6.
- Winston Harrington & Richard D. Morgenstern, Evaluating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sources for the Future, 2004.
- OMB Circular A-4, available at <http://www.whitehouse.gov/omb/circulars/a004/a-4.pdf>.
- Executive Order 12866, available at [http://www.whitehouse.gov/omb/inforeg/eo12866/index\\_eo12866.html](http://www.whitehouse.gov/omb/inforeg/eo12866/index_eo12866.html).
- OMB Reports to Congress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Federal Regulation, available at [http://www.whitehouse.gov/omb/inforeg/regpol-reports\\_congress.html](http://www.whitehouse.gov/omb/inforeg/regpol-reports_congress.html).
- 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1997, Regulatory Impact Analysis: Costs at Selected Agencies and Implications for the Legislative Process, Washington DC.

참 고 문 헌

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1999, Costs Estimates for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9, Washington DC.

OMB, 1996, Economic Analysis of Federal Regulations Under Executive Order 12866(“Best Practices Guidances”) available from <http://www.whitehouse.gov/omb/index.html>.

OMB, 2003, Informing Regulatory Decisions: 2003 Report to Congress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Federal Regulations and Unfunded Mandates on State, Local, and Tribal Entities,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vailable from <http://www.whitehouse.gov/omb/index.html>.

The US Congress, 1999, The Regulatory Right-to-Know Act of 1999.

The White House, 1981, Executive Order n. 12291: Federal Regulation.

The White House, 1981, Executive Order n. 12498: Regulatory Planning Process.

The White House, 1994, Executive Order n. 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부 록



【부록 1 : 미국】

행정부장관, 행정기관장 및 독립규제기관장  
전달 메모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WASHINGTON, D.C. 20503

2011년 2월 2일

발신: Cass R. Sunstein  
Administrator

주제: 행정명령 제13563호 “규제개선과 규제검토”

행정명령 제13563호는 “우리의 규제체계는 경제성장, 혁신, 경쟁력 확보,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한편, 공중보건, 복지, 안전,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 명령은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통합과 혁신을 개선하며, 융통성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통합을 보장하고, 기존 규칙의 소급분석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칙과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행정명령 제12866호와 제13563호의 관계

행정명령 제13563호는 행정명령 제12866호를 확고히 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즉, 제12866호의 조항을 대체하거나 단서를 달기보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더 상세하게 한다. 행정명령 제13563호가 발효

된 이후에도, 기관은 제12866호에 기술된 원칙과 요건을 계속 따라야 한다.

행정명령 제13563호의 제1조는 행정명령 제12866호의 다섯 가지 원칙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 원칙은 편익, 비용, 그리고 부담에 관련된 것이다. 제1조는 또한 기관에 “예견되는 현재와 미래의 비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계량화하기 위하여 여러 기법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 기법에는 기술적 혁신이나 행위변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준수비용의 변화를 찾아내는 것도 포함된다. 이 조항의 목적은 계량화를 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 제1조는 기관이 “평등, 인간의 존엄성, 형평성, 분배효과”와 같이 “계량화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가치를 고려하고 언급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 국민참여

행정명령 제13563조의 제2조는 국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조항에 따라 각 기관들은 “제기된 규제에 대하여 최소한 60일 이상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 편 행정명령 제12866호의 동 조항을 보완한다.<sup>1)</sup> 제2조의 목적은 규제제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늘일 수 있도록 온라인 기술의 사용노력을 지속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이해당사자에게는 더 간단해지고 접근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부담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다.

제2조는 또한 정부 공무원, 전문가, 이해당사자 그리고 국민간의 정보에 대한 “열린 변화 (open change)”를 촉구한다. 이런 측면에서, “열린

---

1) 행정명령 제12866호의 제6조(a)(1)항은 “각 기관은 제기된 모든 규제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의견수렴기간은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변화”는 참여자들이 제공하는 시각과 정보가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어느 정도 공개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따라서, 제2조는 이익단체에 규제제정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의견, 주장, 정보에 반박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규제제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킨다.

이 조항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제시한 주장과 정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이익집단이 제시한 의견을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참여의 핵심 목표는 규제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며, 이익집단의 열린 정보교환은 이러한 노력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제2조는 또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국민이 안전목록과 과학·기술적 발견사항을 Regulations.gov를 통하여 적시에 열람가능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기관은 제안된 규제와 과학·기술적 발견사항에 대하여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sup>2)</sup>

마지막으로, 제2조는 기관이 제안된 규제가 공지되기 이전이라도 규제제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한다. 이 조항은 “규제제정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들과 잠재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의 협의(consultation)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목표는 대안,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관련 비용과 혜택, 그리고 융통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다. 독립기관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 이 요건은 정보·규제관리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에서 대통령행정위원회(President's Management Council)에 전달한 보고서인 규제제정 과정에서의 개방성 향상 - 전자형태로 된 안건의 개선(Increasing Openness in the Rulemaking Process - Improving Electronic Dockets) (2010년 5월 28일),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inforeg/edocket\\_final\\_5-28-2010.pdf](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inforeg/edocket_final_5-28-2010.pdf)에서 “관련 법규, 규정, 정책에 따라, 기관은 문서로 된 규제안건과 동일한 전자형태로 된 규제안건을 Regulations.gov에 게재하여야 한다. 두 가지 형태의 안건은 모두 국민에게 모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기관은 공지문, 지침서, 환경영향서, 규제영향분석서, 기타 수집 정보들과 같이 규제제정에 관련된 참고자료들을 공지 및 의견수렴 기간 동안 전자형태로 업로드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 통합과 개혁

행정명령 제13563호의 제3조는 규제의 단순화와 조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간 협력증대”를 촉구한다. 이 조항은 행정명령 제12866호의 관련 조항을 보완한다. 예를 들어, 이 조항에는 각 기관은 “우선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규제가 누적된 경우의 비용을 고려함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개인, 여러 규모의 기업, 기타 단체 (소규모 커뮤니티와 지방단체 포함) 등 사회에 지우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행정명령 제13563호의 제3조는 행정기관이 (1) 특정 부문과 산업계에 대한 해당 기관의 규정과 타 기관의 규정의 결합효과를 고려하고 (2) 기관간 협력 증진과 규제요건의 조화를 확보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3조는 규정의 단순화와 조화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조항은 규제의 요건이 개별적으로는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더라도 누적효과가 있어서 때때로 과도하고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담을 지울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제3조는 부담, 중복 그리고 분쟁을 줄임과 동시에 예측성, 확실성 그리고 혁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규칙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과 마찬가지로 조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기관내에서 일어나야 한다. 기관들이 단순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듯이 이러한 노력은 기관간에도 일어나야 한다. 정보·규제관리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은 이러한 노력을 촉진·지원한다.

## 융통성 있는 규제도구

행정명령 제13563호의 제4조는 “... 각 기관은 부담을 줄이고 융통성과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규제방식을 발굴하여 고려하라”

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경고(warning), 적절한 기본규칙, 그리고 공개 요건”이 있다. 독립기관은 이 조항을 따라야 한다. 이 조항은 행정명령 제12866호의 관련 조항을 보완하지만 대체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제1조(b)(3)항에 각 기관은 “규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대안을 찾아 평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4조는 융통성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과, 의무사항, 금지사항 그리고 지휘통제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조항은 선택의 자유를 유지하는 방법과 (예를 들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의 확대함으로써) 자유시장의 운용을 개선하는 방법이 갖는 잠재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 조항은 기관이 의무사항이나 전면적 제한보다는 저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행동을 통해 규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는 잘만 사용하면 혁신과 성장뿐 아니라 규제대상간의 경쟁력도 증진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

## 과 학

행정명령 제13563호의 제5조는 2009년 3월 9일자로 행정부장관 및 행정기관장에게 전달하는 대통령 메모 President's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의 “과학적 무결성(Scientific Integrity)”과 구현지침을 다룬다. 이 조항은 각 기관이 “해 기관의 규제행위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과학·기술적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침의 구현에 관하여, 대통령 과학자문관(President's Science Adviser)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과학과 과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과학적 자료와 분석을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환경에서

잘 자란다. 정치에 관련된 공무원은 과학·기술적 발견사항을 금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sup>3)</sup> 행정명령 13563호의 제5조는 대통령의 메모를 확장하여 규제행위의 내용에 지침으로 구현하고 있다.

### 기존 규정의 소급분석

행정명령 제13563호의 제6조는 규정의 소급분석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소급(look back)” 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 명령의 발효 120일 이내에 각 기관은 법과 자원과 규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계획을 작성하여 정보·규제관리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현존하는 주요 규제를 검토하여 수정, 확장, 간소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규제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이게 하고 규제목적을 달성할 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명령 제13563호는 행정부 전반에 걸쳐 소급검토 및 분석 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규칙을 적용하기 이전에는 그 결과뿐 아니라 비용과 혜택을 확신하기 어렵다. 소급분석을 수행하는 동안 규칙의 발효에 관한 원칙은 유효한 것이며 기관은 규칙적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기관에서는 그 기관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규칙이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된다. 많은 주요 규칙은 때때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 대신 모호하고, 불필요하며, 정당하지 않고,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비생산적인 규칙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과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관은 규정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확대되어야 할 것은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수정·개선·폐지하여야 한다. 새로운 기술에 추월당했거나 환경을 미처 예

---

3) John Holdren, Memorandum for the Heads of Agencies and Departments, Scientific Integrity (December 17, 2010),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scientific-integrity-memo-121720\\_10.pdf](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scientific-integrity-memo-121720_10.pdf).

측하지 못했던 규칙은 재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기관의 검토 과정을 통해 폐지나 수정되어야 할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체계적 검토가 더 이상 정당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규칙을 제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검토를 통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곳에 대해서는 규칙을 강화하거나, 보완하거나, 현대화하거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다. 소급분석을 통해 현존하는 규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대에 못 미쳤거나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강력하거나 확장되었거나 또는 다소 상이한 접근법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다. 각 기관은 소급검토 예비계획을 작성할 때 해당 기관의 특정임무, 자원, 조직구조, 규칙제정 이력과 분량 등을 재량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해야겠지만, 모든 계획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야 한다.

- **국민참여**

국민참여에 관한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독립기관은 규칙의 소급분석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계획이 작성되기 전이라도 국민들에게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도 있으며, 수정·개선·폐지할 규칙을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PRA)에 관한 현행 지침에 따라 기관은 문서감축법의 요건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타운 홀 미팅이나 온라인 의견수렴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국민의 피드백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sup>4)</sup> 기관은 예비계획의 초

---

4) 문서감축법 적용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은 정보·규제관리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에서 행정부장관, 행정기관장 및 독립규제기관장에게 전달한 메모인 문서감축법 하에서의 정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 under the Paperwork Reduction Act, 2010년 4월 7일)과 사회 미디어, 웹기반의 대형 기술, 및 문서감축법(Social Media, Web-Based Interactive Technologies, and the Paperwork Reduction Act, 2010년 4월 7일) 문서를 참조.

안이 작성되었거나 해당 계획이 정보·규제관리실에 제출된 이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관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예비계획에 기술된 규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해 당사자를 접촉하려 할 수도 있다. 규칙의 효과에 관한 지식은 사회에 넓게 분포되어 있고 국민 각 구성원은 유용한 정보와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기관은 기존 규칙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우선순위**

예비계획에는 기관이 고려할 요인뿐 아니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검토할 규칙을 선정하는데 사용할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계획에 향후 2년간 검토할 후보 규정 목록의 초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 **비용·편익 분석**

기관은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규정의 비용·혜택을 양적·질적으로 소급분석 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 규정을 수정, 확장, 개선, 또는 폐기하여야 할지 판단할 수 있으며, 사전규제평가의 장단점에 관한 통찰력을 얻게 되어 기관의 분석능력이 향상될 수도 있다.

- **조직구조와 직원할당**

소급검토의 책임은 기관전체에 걸쳐 협력을 이끌어 내 수 있는 고위급 간부가 맡아야 한다. 예비계획은 규제제정 및 집행 관련 부서에 대해 최대한의 독립성을 어떻게 최대한 유지할 것인지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부적인 검토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도 식별하여야 한다.

- **타 소급분석 검토와의 조화**

현존하는 요건 및 권한하에서 많은 독립기관들이 이미 소급분석 및 검토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USC 5편의 규제융통성법(Regulatory Flexi-



bility Act) 제610조는 기관들로 하여금 “상당한 수의 소규모 규제대상에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향후 미치게 될 규칙의 정기검토계획을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라 모든 규칙은 10년마다 검토되어야 한다. 계획작성시 현재의 절차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기관은 예비계획의 1차 초안을 정보·규제관리실의 담당 직원에게 10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규제관리실 담당자는 계획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도 있다. 정보·규제관리실 담당자는 예비계획의 완성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 독립기관

행정명령 제13563호가 독립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 기관들은 기관이 가진 법적 권한에 따라 되도록 모든 조항을 적용하길 권장한다. 특히, 이러한 기관들은 자발적으로 현존 규칙에 대한 소급분석을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

## 【부록 2 : 캐나다】

### 캐나다의 규제 합리화에 관한 지침 (Cabinet Directive on Streamlining Regulation)

#### 캐나다 국민에 대한 책무(commitment)

캐나다 정부는 규제활동이 현재와 미래 세대의 캐나다 국민에게 최대의 전반적인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캐나다 국가와 다른 정부들과 함께 협력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헌신한다.

규제에 있어, 연방정부는:

- 의회의 입법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캐나다인의 건강, 안전, 안보, 환경의 질, 사회, 경제 복지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킨다.
- 기업가 정신, 투자, 혁신을 장려하여 공평하고 경쟁적인 시장경제를 증진시킨다.
- 완전한 과학적 확신이 없거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경우 예방적 조치의 적용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캐나다 및 전 세계에서 입증된 가장 뛰어난 지식과 과학 그리고 증거에 기반하여 결정한다.
- 포괄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해가능하고 접근성이 있으며 상황대처가 가능한 규제를 창출한다.
- 인적·재무적인 제반 자원을 가장 유용한 곳에 집중시켜 규제의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하는지 확인하여 규제의 효율성 및 효과를 향상시킨다.

- 연방정부 전반에 걸쳐 캐나다와 외국의 다른 정부 및 기업과 캐나다 국민과 협의, 조정 그리고 협력을 통하여 규제 절차의 시작부터 끝까지, 적시성,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1.0 서 문

규제는 캐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며 혁신과 경제의 번영을 위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규제들은 법의 한 형태이다 - 이들은 구속력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특정 사람이나 상황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규칙(rules)을 정하는 것이다.

종종 “위임 된”(delegated) 또는 “하위 법”(subordinate legislation)으로 표현되는 규정은 내각의 장관 또는 행정기관 등 의회가 권한을 위임한 자 또는 단체에 의해 작성된다. 규정(regulations)을 만드는 권한은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통해 명확히 위임되어야 한다.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작성할 때 부처는 규정(regulations)을 포함하여 하위의 법적 수단이 행정명령법(Statutory Instrument Act)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규정들과 다른 수단들은 내각에 의해 승인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요건이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도구를 통제하는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입법에 관한 지침(Cabinet Directive on Law-making)을 참조하라.

## 2.0 적용 범위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지침은 연방정부의 규제절차에 관련된 모든 부처(all departments and agencies)에 적용된다. 정부 공무원은 규제의 생애주기(life cycle)의 모든 단계 - 개발, 실시, 평가 및 검토 - 에서 이 지침을 준수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

### 3.0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지침의 실시

이 지침은 규제절차에 대한 정부 공무원을 위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framework)와 문서들에 의해 보완된다. 이러한 체계는 <http://www.regulation.gc.ca>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규제를 할 때 부처는 이하의 법규를 포함하여 내각 및 재무위원회의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 행정명령법(Statutory Instrument Act);
- 임대료법(User Fees Act);
- 재정관리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
- 입법에 관한 내각 지침(Cabinet Directive on Law-making);
-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제안의 환경 평가에 관한 내각 지침(Cabinet Directive o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Policy, Plan and Program Proposal);
- 위험에 대한 과학적인 의사결정의 예방조치 적용 체계(A Framework for the Application of Precaution in Science-based Decision Making about Risk);
- 과학 및 기술자문을 위한 체계: 정부 의사 결정에 있어서 과학 및 기술자문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원칙 및 가이드라인(A Framework for Science and Technology Advice :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Effective Use of Science and Technology Advice in Government Decision Making).

지침의 검토(review)는 시행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캐나다 재정위원회(규제 관련 업무 부문)는 성과측정 및 평가 전략 개발 그리고 지침의 시행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해당 부처와 협력한다. 이 외에도 부처는 여기서 정해진 책무를 준수하는지, 지시

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상급 관리자(senior management) 및 규제 관련 업무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의 검토에 관심을 가진 캐나다 국민의 참여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 3.1 규제절차의 요건

모든 부처는 규제 관련 업무부서와 협의하여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자원이 집중되어야 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규제의 제안을 평가(assess)한다. 이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된다.

- 규제에 의한 캐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안보, 환경 및 사회적·경제적인 복지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 정부, 기업 또는 캐나다 국민에게 비용 또는 저축 및 캐나다 경제와 국제 경쟁력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 다른 연방 부처, 캐나다의 다른 정부 또는 캐나다 외교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및
-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캐나다 국민 간의 관심, 논쟁 및 지원 정도

긴급 사태 - 캐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안보, 경제 또는 환경에 임박한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단축된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부처는 공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규제 관련 부서와 협력한다.

## 4.0 규제 분석

### 4.1 규제 협의

정부부처는 규제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이해관계가 있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를 파악하면서, 균형잡힌 협의기회를 당사자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협의를 할 경우 정부부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사용할 수 있는 증거, 과학 또는 지식 기반 공공정책 과제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캐나다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유도한다;
- 정책 목표의 개발에 캐나다 시민을 포함시킨다;
- 이해 당사자가 투입할 자원을 정리 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일정을 명확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또한,
- 협의의 성과 및 의사 결정에서 고려된 우선순위에 대해 캐나다 국가와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시기적절한 의견을 제공한다.

정부부처는 또한 First Nations, Inuit, and Métis 등 원주민 공동체와 해당 주민들; 국가, 지역 및 지방의 원주민 조직; 원주민 정부와 협력하여 1982년 헌법 제35조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충족되도록 보장해야한다.

정부부처는 관련 법안을 관보(Canada Gazette) 제1부에 게재하여 법안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안에 수렴하여야 한다. 표준 의견수렴 기간은 30일이지만, 입법의 요건 및 국제적인 의무 기타 고려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또는 수정된 기술 규정의 제안 내용은 최소 75일의 의견수렴 기간이 요구된다.

정부부처는 제안된 규정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규제 제안의 수립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를 대신하는 점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내각은 법안의 관보 게재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4.2 공공정책 과제의 특정 및 평가

정부부처는 잠재적인 위험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증거와 지식을 통해 공공정책의 과제를 평가할 의무가 있다. 공공정책 과제를 평가하고 기록할 때 정부부처는 다음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 부 록

- 긴급한, 즉각적인 또는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공공정책 과제, 그 원인과 맥락을 분석한다;
-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주와 지방정부, 외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증거에 기반한 평가, 분석, 표준 및 분류 체계를 검토한다;
- 과제의 성격과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의사 결정자와 캐나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및
- 공공정책 과제의 과학적·경험적 증거, 불확실성, 윤리적 고려 사항 및 국민의 의견을 정리한다.

우수 사례 :

중요한 제안에 대해 정부부처는 독립적으로 위험 평가를 재검토하도록 권장된다. 정부부처는 이 검토를 위해 과학 자문위원회(science advisory boards)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상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정부는, 이러한 위험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완벽한 과학적 확신의 부족이 캐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또는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연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다. 예방 조치의 적용에 대한 지침은 정부부처는 위험에 대한 과학적인 의사 결정의 예방 조치의 적용 체계(A Framework for the Application of Precaution in Science-based Decision Making about Risk)가 권장된다.

### 4.3 공공정책의 목표 설정

정책의 과제가 평가되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정부부처는 캐나다 국민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하는 공공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책임이 있다. 정부부처는 다음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

- 공공정책의 과제 및 그 원인에 해당하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 법률 및 정부의 우선사항이 타당성 및 일관성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기대되는 성과에 대조시켜 진전을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사용한다.

#### 4.4 규제 대응 선택, 설계 및 평가(assessing)

##### 적절한 정부 수단의 선택

정부부처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및 비(非)규제적 수단의 효과 및 적절성을 평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부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잠재적인 위험을 확인한다;
- 공공정책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여해야 기관 및 당사자를 파악한다;
- 규제 및 비규제적인 방안을 포함하여 적절한 수단들을 파악하고 규제 제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 적용을 정당화한다;
- 규제의 대응이 정책의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 설명한다;
- 규제의 대응이 위험의 정도 및 유형과 균형있는 것임을 설명한다;
- 규제의 대응이 그 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분야에 부당한(unduly)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 특히 기술 규정에 관하여 그 디자인 또는 묘사된 특성보다 성과의 관점에서 규제 요건을 포함시킨다;
- 관련 국가 또는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의도되는 정책 목적을 충족하는 때는, 이들의 기술규정에 기초하여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한다.



우수 사례 :

정부부처는 캐나다의 국가 표준 제도(National Standard System, NSS)에서 제공하는 표준화 도구 및 기술을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이 네트워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우수 사례 및 시험 방법을 제공하고 시장 진입 및 시장 채용을 개선하고 여러 시험 또는 반복적인 인증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scc.ca/en/nss/index.shtml> 참조.

입법자들은 캐나다 법(law)과 규정(regulations)에 영향을 미친 캐나다 또는 국제 규격들을 검색할 수 있는 RegWatch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https://alert.scc.ca/rwh/basic\\_e.jsp](https://alert.scc.ca/rwh/basic_e.jsp) 참조.

법적 의미의 평가 규정을 디자인 할 때, 정부부처는 캐나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of Canada)의 지원을 얻어 제안의 법적 의미를 평가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건전하다는 점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해당 부처는 규제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수권 법률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
- 1867년 헌법과 1982년 헌법(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을 포함하여 제35조에서 발생하는 원주민과 조약의 권리에 관련된 모든 의무의 해설과 함께) 및 1960년 캐나다 인권 선언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 기타 관련 법률과 효과적으로 연계된, 특히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지침의 실시라는 제목 아래 문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과 함께 효과적으로 운용 할 수 있다.

### 국제적인 의무 준수

정부부처는 인권, 건강, 안전, 안보, 국제무역과 환경과 같은 분야에서 캐나다의 국제적인 의무를 존중해야한다. 정부부처는 또한 규제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이러한 의무 관련 대책(provisions)을 수립해야 한다.

규제 제안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부처는 다음 기관에서 통보 및 지원(assistance)을 받아야 한다 :

- 캐나다 외교통상부 국제법무국(Legal Bureau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 국제법무국 캐나다의 국제법적 의무 협상 및 해석에 책임을 지고 규제에 관하여 그 의무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조언을 제공한다;
- 캐나다 외교통상부(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실시를 포함한 캐나다 국제무역 의무의 이행 및 조정을 담당한다.
- 캐나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Canada) - 규제의 계획안과 캐나다의 국제적 의무의 일관성을 포함한 법적인 사항에 관하여 부처에 조언할 책임을 가진 전문화된 부서 및 부처로서의 사법 업무를 수행;
- 캐나다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국(Trade Law Bureau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과 캐나다 법무부는 캐나다 국제무역 의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 조정 및 협력

캐나다 정부 전체에 걸친 조정

연방 정부부처는 캐나다인 그리고 경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누적되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여 규제의 개발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부처는 다음의 일을 수행해야한다:

- 제안된 규제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진 다른 연방 정부부처를 파악하고 협의한다;

## 부 록

- 규제되는 분야에 있어서 유사한 또는 관련된 규제 요건 - 기존의 혹은 제안 된 것 - 을 특정하는 것;
- 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요구 사항을 평가(assess)하고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보완 및 협력적인 방법을 개발한다;
- 복잡성 및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의 실시 및 관리를 조정한다.

우수 사례 :

부처는 규제 프로그램 운영(administration)에 서비스 지향 기법을 적용하도록 권장된다. 단일 창구 서비스(single-window service)의 제공과 같은 조정된 기술은 운영상의 부담을 절감하고 준수를 개선 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iccs-isac.org>에서 Institute of Citizen-Centred Service 웹 사이트 참조

## 주 및 준주 정부와의 조정

부처는 규제의 개발 및 실시에 있어서 주 및 준주(準州) 정부와 조정을 할 책임이 있다. 부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연방 규제 이니셔티브에 주와 준주(準州)의 해당 기관(counterpart)을 참여시키기;
- 동일한 또는 관련된 주 및 준주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평가(assess)하고 또한 모든 누적 영향을 관리하며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요구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주무 당국(jurisdictions)과 협력한다;
- 캐나다 교역 협정(Canadian Agreement on Internal Trade)과 같은 캐나다 내의 정부간 협정을 준수한다;
-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요건에 관한 상호간의 인식, 공감대에 근거하여 기존의 채용 및 보고의 요건의 일관성 등과 같은 협력 약정을 개발한다;

-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국내 교역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전국적인 기준 또는 공통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설정한다.

### 국제 협력

부처는 다음과 같이 양국 간 또는 다른 나라와의 협의를 통한 협력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 국제적인 우수 사례를 검토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을 공유하는 국제기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개발 및 현대화를 채택하거나, 거기에 기여하고 해당 국가와(counterpart) 함께 호환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추구한다;
- 캐나다만의 특별한 규제요건 또는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를 특별한 상황 그리고 장기적으로 캐나다 국민에게 최대의 전체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특히, 캐나다의 특별한 요구 사항이 제시되어 있을 때, 그 방법의 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 규제의 편익 및 비용의 분석

규제의 편익 및 비용을 분석하여 규제를 해야만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규제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부부처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제 및 비규제적 수단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할 책임이 있다.

이 분석은 정량적 지표 및 비용과 편익을 정량화하기 어려운 경우 정성적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영향의 분석은 경제적인 효율성이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공공정책의 목적이 아닌 경우조차도 의사 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순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을 평가(assessing)할 때 정부부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 제안된 규제 및 가능한 대안이 캐나다 시민, 기업 및 정부에 미치는 잠재적인 좋은 점과 나쁜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assess)한다;
- 그러한 좋은 또는 나쁜 영향이, 영향을 받는 캐나다 전역의 다양한 당사자 경제 부문과 캐나다 지역에 걸쳐서 어떻게 배분되는지 확인한다.

우수 사례 :

설명 책임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처는 중요한 제안의 정량화 할 수 있는 또는 정량화 할 수 없는 비용 및 편익에 관한 회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선택지의 제언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지를 개발할 때, 정부부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누적 관리상의 부담을 제한하고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한 최소한의 비용부담을 캐나다 국가와 기업에 부과;
- 소규모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부담이 적으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식별;
- 경쟁에 관한 규제적인 제한이 공평하다는 것, 규제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의도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한과 공익사이에 비교형량을 확실히 하는 것;
- 환경, 캐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경쟁성,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규제에 의해 유해한 영향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비교적 좋은 영향을 강화한다;
- 경감 및 강화 전략이 고려 된 후 남아있는 유해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성격을 특정하기;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식별.

환경적인 영향 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수행하기 위한 자세한 지침에 대해서 정부부처는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제안의 환경 평가에 관한 시행령(Cabinet Directive o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Policy, Plan and Program Proposal)을 참조

#### 4.5 실시 준수 및 시행을 위한 계획 입안

부처는 규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하여 인적 및 재정적 제반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작동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 규제에 제시되는 승인 절차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투명성을 가진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승인 절차에 대한 요구 사항을 식별하는 서비스 기준을 공표한다;
- 다른 정부부처와 같은 부문에서 규제하고 있는 캐나다의 다른 정부와 함께 실시하고 집행을 위한 조정 기회를 잘 활용한다;
- 준수 및 시행 활동을 포함하여 제안 된 선택에 의해 요구되는 필요한 인적 및 재정적 여러 자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 규제를 실시하는 책임자가 필요한 제반 자원, 기술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보장한다.

서비스 기준 개발 및 평가 관련 지침 정부부처는 관련 재정위원회 정책(Treasury Board policies)을 참조해야 한다.

### 준수 및 시행을 위한 계획

정부부처는 준수 및 시행전략을 개발 및 실시함으로써 규제의 효과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 적절한 경우는 규제를 관리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자를 포함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개발된다.
- 적절한 범위의 준수 도구를 사용한다;
- 준수 활동의 평가(assessing) 및 검토 일정, 절차를 제공한다.

#### 4.6 규제의 측정, 평가 및 검토

정부부처는 규제가 그 첫 번째 정책 목표를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것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규제의 틀을 업데이트 할 책임이 있다.

### 성과 측정 및 보고

정부부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공공정책 과제를 관리하면서 규제의 의도된 성과를 확인하고 규제 제안을 제출하기 전에 중요한 규제 활동에 대한 시간 기반의 성과 지표를 개발한다;
- 정부기업과 캐나다 국민들에게 가능한 작은 부담을 부과하는 한편 모니터링 및 보고 활동이 효과적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 필요에 따라 준수 계획을 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통합 한다;
- 기존 규제의 성과에 대한 성과 정보를 수집하고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이 정보를 캐나다 국민에게 제공한다.

### 규제 프로그램의 평가

정부부처는 캐나다 국민에게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 재정위원회의 평가 정책(Policy on Evaluation)에 설정된 기간 및 주기에 따라 규제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한다.

정부부처는 적절한 경우에는 규제 프로그램의 영향 및 복잡성에 따라 다음의 분야를 평가(assess)해야 한다.

- 투입자원(예를 들어, 여러 자원 명령(mandate)과 실행 할 수 있는 권한(enabling authorities)), 활동, 효과, 규제 프로그램의 최종 성과 및 보고 된 성과 달성에 프로그램이 기여한 정도;
- value for money(예를 들어, 타당성, 효율성 및 비용 효과);
- 통제, 의사 결정과 책임의 단계 서비스 기준 및 서비스 제공의 구조.

### 규제 체계의 검토

정부부처는 업데이트가 필요한 규제 체계를 특정하기 위해 성과측정 및 평가(evaluation)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assess)하여야 한다.

일단 특정 된 경우, 정부부처는 다음의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를 검토(examine)해야 한다:

- 현재의 규제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한 효과;
- 기존 방법의 선택, 개입의 수준과 규범성 정도;
- 사용자에게 의한 규제의 명확성 및 편리성(accessibility);
- 무역, 투자 및 혁신을 포함한 경쟁력에 전반적인 영향.

### 5.0 캐나다 국민에 대한 계획 및 보고 책임

정부부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차년도에 대한 규제의 계획 및 우선사항을 개발한다;



## 부 록

- 재무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계획, 우선사항, 성과 및 규제를 재검토한다.

### 6.0 문의 및 자세한 정보

캐나다 재무위원회 사무국

전화 : 1-877-636-0656

Email : [Info@tbs-sct.gc.ca](mailto:Info@tbs-sct.gc.ca)

웹 사이트 : <http://www.regulation.gc.ca>